

## ▶ 목 차 ◀

|                                       |    |
|---------------------------------------|----|
| <b>I . 투자 여건</b> .....                | 5  |
| <b>II . 투자유치 제도</b> .....             | 7  |
| <b>III . 법인 설립</b> .....              | 23 |
| <b>IV . 연락사무소 설립</b> .....            | 28 |
| <b>V . 조세 제도</b> .....                | 29 |
| <b>VI . 노무 관리</b> .....               | 30 |
| <b>VII . 기타 정보</b> .....              | 32 |
| <b>&lt;부록&gt;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b> ..... | 39 |

##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투자형태 결정

합작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정관 개정, 대표이사 선임등) 시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베트남 측의 거부권 행사시 경영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제조업)는 100% 단독투자로 이루어진다. 합작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 시 베트남측이 토지를 출자하여 합작하는 경우 및 100% 내수판매 대상 투자 시 베트남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의 합작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신의 업종 및 투자전략에 따라 적절한 투자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형태에 따른 차별은 전혀 없다.



공장설립형 투자는 산업공단(또는 수출가공공단) 입주자 유리 산업공단(또는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하는 일정 규모(통상 US\$ 500만) 이하 투자인 경우, 지역공단관리청에 투자허가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투자허가 절차, 법인설립, 공장설립 등의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며, 따로 법률, 컨설팅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단내에 세관이 입주해 있어 수출입이 용이하며, 법인세 혜택도 누릴수 있다.



### 둘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가끔 잘못된 정보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KOTRA 등 공공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 . 투자 여건

## 1. 투자 환경

### ■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 한반도의 1.5배의 국토면적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
- 세계 2위의 쌀, 커피 수출국, 석유, 석탄, 수산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미래형 인구구조

- 문맹률 10% 미만의 양질·저임 노동력 풍부
- 인구의 약 50%가 25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
- 여타 동남아국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 우수

### ■ 투자 장려 분야

- 첨단기술산업, 수입대체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 제공(법인세 우대 등)
- 저임/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베트남 내 생산 후 제3국 수출 형 투자 유망

### ■ 대선진국 수출 및 ASEAN 생산거점지로서 유망

- 2007년초 WTO 공식 가입, 미국의 대 베트남 PNTR(항구적 무역 정상관계) 지위 부여로 대 선진국 수출 전진기지로 유망
-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으로 역내 수입관세가 최대 5%임을 감안, ASEAN 시장의 생산거점지로 유망

## 2.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누계(1988~2006) |                  |                  | 2006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건수         | 투자금액            | 법정자본금           |
| 대 만        | 1,550         | 8,112.35         | 2,972.20         | 115        | 218.14          | 124.33          |
| 싱가폴        | 452           | 8,076.01         | 3,685.79         | 52         | 270.47          | 93.84           |
| <b>한 국</b> | <b>1,263</b>  | <b>7,799.43</b>  | <b>2,606.05</b>  | <b>207</b> | <b>2,426.00</b> | <b>936.54</b>   |
| 일 본        | 735           | 7,398.91         | 4,823.54         | 137        | 996.22          | 378.76          |
| 홍 콩        | 375           | 5,279.52         | 2,132.56         | 21         | 1,142.01        | 396.08          |
| 버진아일랜드     | 275           | 3,225.64         | 1,366.20         | 18         | 338.28          | 83.51           |
| 네델란드       | 74            | 2,365.34         | 2,029.34         | 11         | 100.91          | 38.17           |
| 프랑스        | 178           | 2,197.72         | 1,128.42         | 18         | 36.11           | 18.01           |
| 미 국        | 306           | 2,111.46         | 657.25           | 51         | 769.76          | 512.53          |
| 말레이시아      | 201           | 1,648.35         | 995.62           | 18         | 16.53           | 10.44           |
| 기 타        | 1,404         | 12,258.96        | 6,386.31         | 185        | 1,524.57        | 715.64          |
| <b>합 계</b> | <b>6,813</b>  | <b>60,473.69</b> | <b>28,783.28</b> | <b>833</b> | <b>7,839.00</b> | <b>3,307.85</b> |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2007.1월)

- 누계기준으로 한국은 금액기준 3위, 건수기준 2위 투자국  
(1위 대만, 2위 싱가포르)
- 2006년 한해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금액/건수기준 모두 1위에 등  
극. 특히 2위인 홍콩보다 2배 이상인 총 24억 달러를 투자
- 이는 전통적인 대 베트남 투자형태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 후 제3국 수출의 중소규모 형 제조업 투자가 여전히 많  
은 편임
- 한편, 최근에는 투자가 대형화, 다변화되는 추세. 베트남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형 기간산업투자(포스코, 두  
산중공업), ASEAN 생산거점화형 제조업투자(금호타이어), 유  
통시장 진출(롯데마트), 신도시개발 등이 활발함에 기인

## II. 투자유치 제도

### 1. 개정 외국인투자법(2006.7.1부) 요약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을 제정,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됨.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외국기업 관련 구법과 신법 주요 차이점>

| 차이점                    | 구법(舊法)                                                                                                                                                                     | 신규법(新法規)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7월 1일 이전, 즉 새로운 투자법과 기업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외국 회사는 투자법에서 정한 회사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7월 1일자로, 외국 기업도 기업법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사를 베트남 기업과 일하게 설립할 수 있음</li> </ul>                                                                                                                                               |
| 투자허가서<br>(IC)<br>발급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기관: 중앙정부 계획투자부(MPI): 지방정부 계획투자부서(DPI):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li> <li>• 투자 자본금(1000만 달러 이하)과 관련하여 성이나 시정부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기관: 지방정부 계획투자부(DPI)와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li> <li>• DPI와 BOM는 투자허가서(IC)의 발급을 위해 수상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에 한해서 IC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li> <li>• 중요한 사업은 투자 자본금에 상관없이, 또는 투자 자본금이 1조 5천억동(9,375만 달러) 이상인 사업일 경우, 수상의 승인이 필요</li> </ul> |
| 투자허가서<br>발행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자본금</li> <li>• 토지 면적</li> <li>• 프로젝트 유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자본금</li> <li>• 프로젝트의 유형: 수상의 기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만 해당</li> </ul>                                                                                                                                                            |
| 투자허가서<br>취득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또는 등록</li> <li>• 투자자가 직접 투자 승인허가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욱 간단해짐</li> <li>• 평가 또는 등록</li> <li>• 조건부 프로젝트 혹은 수상의 기준이 필요한 프로젝트만 지도계획투자처 혹은 관리위원회에 투자 승인 허가서 관련서류를 제출</li> </ul>                                                                                                    |

|                       |                                                                                                                                                                                              |                                                                                                                                                                                                                         |
|-----------------------|----------------------------------------------------------------------------------------------------------------------------------------------------------------------------------------------|-------------------------------------------------------------------------------------------------------------------------------------------------------------------------------------------------------------------------|
| 투자허가서<br>발행에<br>필요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은행잔고 증명 또는 최근 2년간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잔고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li> <li>•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재정능력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함</li> </ul>                                                                                               |
| 투자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정부가 국내 회사 (공공 전자/통신/방송/교통/운송업 서비스 등)를 통제 또는 보호하고자 하였기에, BCC 또는 합작 회사의 형태로 투자하여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투자 형태는 없음</li> <li>• 그러나 여전히 조건부 프로젝트의 경우, 합작 필수 사항 존재. 베트남 정부는 세부적인 필요조건에 관한 관계 시행령이나 회람(통지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li> </ul>                                                     |
| 정관자본<br>법정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외국 기업의 법정자본은 최소한 총투자 자본의 30%를 차지해야 함</li> <li>• 기존법에서는, "법정자본금"이란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뜻함</li> <li>• 외국 투자법 제16조에서,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것은 금지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 투자법의 어느 조항과 시행령 No.108에도 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li> <li>• 신규법 하에서,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법정 자본금"이란 개념대신 "정관 자본금"으로 표현</li> <li>• 정관 자본의 감자에 대한 제한 없음(1인 유한회사의 경우 규제조항 있음)</li> </ul> |
| 만장일치<br>승인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투자법의 제14조에 서, 합작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즉 대표이사의 임명과 면직, 합작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장일치 승인 필수사항 삭제. 이는 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없음</li> <li>• 중요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주주)이 정관 자본의 최소 65~75%를 소유하는 경우, 이들이 내린 결정은 유효함</li> </ul>        |

## 2. 투자 우대 분야

### 특별 우대 투자 분야 (AA)

#### I.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전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 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9. 식수 및 조립
10.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 어업
12.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13.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 III.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14.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15.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16.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17.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18.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 V.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VI.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 20.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21.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22.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23.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 VII.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 24.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25. 해난 구호 서비스

26.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 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 일반 우대 투자 분야 (A)

### I.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 설비 생산,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6.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증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溉)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20. 약용 식물의 재배
21.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22.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류의 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24.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25.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 III.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양성

26. 유류 오염 방지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7.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28.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29.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 V.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30.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31.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32.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33.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 3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 VI.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Ⅶ. 전통 분야 발전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Ⅷ.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상에서 공중 전화 연결 센터  
개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 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49.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 3. 투자 우대 지역

| 차 례 | 성(省)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특별히 낙후된 지역 (BB)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낙후된 지역 (B)                                                          |
|-----|-------------|-------------------------------------------------------------------------------|-------------------------------------------------------------------------------------|
| 1   | Bac Kan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2   | Cao Bang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   | Ha Giang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4   | Lai Chau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5   | Son La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6   | Dien Bien   | 성(省)내 전체 현과 Dien Bien<br>시(市)                                                 |                                                                                     |
| 7   | Lao Cai     | 성(省)내 전체 현                                                                    | Lao Cai 시(市)                                                                        |
| 8   | Tuyen Quang | Na Hang, Chiem Hoa 현                                                          | Ham Yen, Son Duong, Yen Son va<br>thi xa Tuyen Quang 현                              |
| 9   | Bac Giang   | Son Dong 현                                                                    | Luc Ngan, Luc Nam, Yen The,<br>Hiep Hoa 현                                           |
| 10  | Hoa Binh    | Da Bac, Mai Chau 현                                                            | Kim Boi, Ky Son, Luong Son, Lac<br>Thuy, Tan Lac, Cao Phong, Lac<br>Son, Yen Thuy 현 |
| 11  | Lang Son    |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br>Binh, Trang Dinh, Van Lang, Van<br>Quan 현 |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
| 12  | Phu Tho     | Thanh Son, Yen Lap 현                                                          | Doan Hung, Ha Hoa, Phu Ninh,<br>Song Thao, Thanh Ba, Tam Nong,<br>Thanh Thuy 현      |
| 13  | Thai Nguyen | Vo Nhai, Dinh Hoa 현                                                           | Dai Tu, Pho Yen, Phu Yen, Phu<br>Luong, Phu Binh, Dong Hy 현                         |
| 14  | Yen Bai     | Luc Yen, Mu Cang Chai<br>Tram Tau 현                                           | Tran Yen, Van Chan, Van Yen,<br>Yen Binh, thi xa Nghia Lo 현                         |
| 15  | Quang Ninh  |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br>현 부속 도서들                                       | Van Don 현                                                                           |
| 16  | Hai Phong   | Bach Long Vy, Cat Hai 현                                                       |                                                                                     |
| 17  | Ha Nam      |                                                                               | Ly Nhan, Thanh Liem 현                                                               |
| 18  | Nam Dinh    |                                                                               |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br>Nghia Hung 현                                    |
| 19  | Thai Binh   |                                                                               | Thai Thuy, Tien Hai 현                                                               |
| 20  | Ninh Binh   |                                                                               | Nho Quan, Gia Vien, Kim Son,<br>Tam Diep, Yen Mo 현                                  |

|    |                |                                                                                                                           |                                                                          |
|----|----------------|---------------------------------------------------------------------------------------------------------------------------|--------------------------------------------------------------------------|
| 21 | Thanh Hoa      |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 Thach Thanh, Nong Cong 현                                                 |
| 22 | Nghe An        |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
| 23 | Ha Tinh        |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
| 24 | Quang Binh     |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25 | Quang Tri      | Huong Hoa, Dac Krong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26 | Thua Thien Hue | A Luoi, Nam Dong 현                                                                                                        |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
| 27 | Da Nang        | Hoang Sa 현                                                                                                                |                                                                          |
| 28 | Quang Nam      |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 Dai Loc, Duy Xuyen 현                                                     |
| 29 | Quang Ngai     |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 Nghia Hanh, Son Tinh 현                                                   |
| 30 | Binh Dinh      |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 Hoai An, Phu My 현                                                        |
| 31 | Phu Yen        |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 Song Cau, Tuy Hoa, Tuy An 현                                              |
| 32 | Khanh Hoa      |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
| 33 | Ninh Thuan     | 성(省)내 전체 현                                                                                                                |                                                                          |
| 34 | Binh Thuan     | Phu Quy 현                                                                                                                 |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
| 35 | Dac Lak        | 성(省)내 전체 현                                                                                                                |                                                                          |
| 36 | Gia Lai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7 | Kon Tum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8 | Dak Nong       | 성(省)내 전체 현                                                                                                                |                                                                          |

|    |                 |                                                   |                                                             |
|----|-----------------|---------------------------------------------------|-------------------------------------------------------------|
| 39 | Lam Dong        | 성(省)내 전체 현                                        | Bao Loc 군(郡)                                                |
| 40 | Ba Ria-Vung Tau | Con Dao 현                                         | Tan Thanh 현                                                 |
| 41 | Tay Ninh        |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2 | Binh Phuoc      | Loc Ninh, Bu Dang, Bu Dop 현                       |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
| 43 | Long An         |                                                   |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
| 44 | Tien Giang      | Tan Phuoc 현                                       |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
| 45 | Ben Tre         |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6 | Tra Vinh        | Chau Thanh, Tra Cu 현                              |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
| 47 | Dong Thap       |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8 | Vinh Long       |                                                   | Tra On 현                                                    |
| 49 | Soc Trang       | 성(省)내 전체 현                                        | Soc Trang 군(郡)                                              |
| 50 | Hau Giang       | 성(省)내 전체 현                                        | Vi Thanh 군(郡)                                               |
| 51 | An Giang        |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52 | Bac Lieu        | 성(省)내 전체 현                                        | Thi xa Bac Lieu                                             |
| 53 | Ca Mau          | 성(省)내 전체 현                                        | Ca Mau 시                                                    |
| 54 | Kien Giang      | 성(省)내 전체현 및 부속 도서                                 |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
| 55 | 기타 지역           |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 공업단지(IZ,EPZ)                                    |

#### 4. 투자금지 분야

##### Ⅰ.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1.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2.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3.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II.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4.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5.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6.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8. 인간 복제 실험

## III.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 IV.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12.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V.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각종 투자 프로젝트

### 5. 조건부 투자허가 분야 (외국 투자자 해당)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 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 6. 수상허가가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

| 사 업                                                                                                                                                                                                                                                                                                                                                                                                                                                             | 자본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li> <li>•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li> <li>• 석유의 탐사, 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 채취 및 공정</li> <li>•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li> <li>•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li> <li>• 담배 생산</li> <li>• 대학 기관의 설립</li> <li>• 공업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li> <li>•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li> <li>• 우편과 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li> <li>•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li> <li>•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li> </ul> | 상관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분야에의 사업, 광물의 공정 야금</li> <li>• 철도, 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구조의 건설</li> <li>•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li> </ul>                                                                                                                                                                                                                                                                                                                      | 1만5천억 동 이상<br>(9,375만 달러) |

## 7. 투자 인센티브

### ■ 법인세 우대

-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8%임.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

<법인세 우대세율>

| 우대세율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면제기간             | 감세기간          |
|------|--------------------------|--------------|------------------|---------------|
| 20%  | 일반우대산업(A) or 일반우대지역(B)   |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2년 | 이후 5년간 50% 감세 |
| 15%  | 일반우대산업(A) and 일반우대지역(B)  |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3년 | 이후 7년간 50% 감세 |
| 10%  | 특별우대산업(AA) or 특별우대지역(BB) |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4년 | 이후 9년간 50% 감세 |

예) 15% 우대세율 적용받고, 2007년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최초이익이 2008년에 발생했다면 그전까지 0% 적용,
- 최초이익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인 2010년까지 0% 적용,
- 이후 7년간 50% 감세이므로, 2017년까지 7.5% 적용,
- 2018년 우대세율 15%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후인 2019년부터는 정상법인세 28% 적용

#### ■ 수입 관세 면제

- 현물출자되는(자본금에 편입되는) 공장설비용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생산용 물류시스템, 노동자 출퇴근용 24인승 이상차량(기타용도 차량은 과세)

####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면제

- 수출용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원재료는 275일 동안 수입관세 납부가 유예됨
-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세관에 해당 원자재의 수입목적 및 수량 등을 신고하여 납부유예를 받아야 하며, 275일 안에 반드시 제조하여 수출완료 해야 함

### 8. 외국인 투자 형태

- 현행 베트남 기업법에 설립 가능한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종류는 크게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임

■ 1인 유한 책임회사(So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2인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with more than one member)

-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
-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음.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로움
-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음.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65% 기준

### Ⅲ. 법인 설립

#### 1. 법인설립 필요서류

| 서 류                     | 비 고                                                                                |
|-------------------------|------------------------------------------------------------------------------------|
|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서식                                                                                 |
| 기업 정관                   |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
| 창립 사원 명단                |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
| 창립 주주 명단                | 주식회사에 해당됨                                                                          |
| 합작 계약서                  |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 경영협력계약                  | BCC 형태에 해당됨                                                                        |
| 재정능력 협약서(별도양식)          |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
| 사업 예비 조사                |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
| 임대 계약서(가계약)             |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
|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
| 자격 증명서                  |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
| 은행 잔고 증명서<br>(개인투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
|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의미)                                             |
|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                                                                                    |
|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
| 위임장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

## 2. 서류 공증 방법 (2~3주 소요)

- 필요서류 영문 번역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과에서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 3. 투자 서류접수 및 승인기관

- 2006.7.1부 개정 투자법에 따라 모든 투자허가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전됨. 지방정부 투자승인기관은 공단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인민위원회 투자계획부(DPI), 공단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청이 투자승인기관임
- 투자승인기관은 완비된 투자서류 접수 후 15일 내 서면으로 투자 승인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인 경우 투자허가서 득하기까지 약 1~1.5개월 정도 소요 (서류준비 2~3주, 허가기간 2주)

### ■ 지방정부 투자계획부 (DPI: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 전화: (84-8) 829-3179
  - 팩스: (84-8) 829-0817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주소: 17 Tran Nguyen Han, D, Hoan Kien, Hanoi
  - 전화: (84-4) 826-0257
  - 팩스: (84-8) 825-5275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84-61) 825-694
  - 팩스: (84-61) 824-935

- 빈증성 인민위원회

- 주소: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84-650) 828-023
- 팩스: (84-650) 825-194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 전화: (84-31) 842-307
- 팩스: (84-31) 842-021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 전화: (84-64) 852-502
- 팩스: (84-64) 859-080

-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 전화: (84-511) 810-054
- 팩스: (84-511) 810-056

■ 산업 공단 관리청

- HEPZA(호치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 전화: (84-8) 823-5218
- 팩스: (84-8) 829-4271

- HIEPZA(하노이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52, Tue Tinh St., Hanoi
- 전화: (84-4) 943-0957
- 팩스: (84-8)943-0764

- DIZA(동나이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Lot No 1,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 전화: (84-61) 892-378
  - 팩스: (84-61) 892-379
  
- MBIZ(빈증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 전화: (84-650) 820-093
  - 팩스: (84-650) 823-984
  
- HEPIZA(하이퐁시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화: (84-31) 841-694
  - 팩스: (84-31) 842-426
  
- BIZA(바리아붕타우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 전화: (84-64) 857-359
  - 팩스: (84-64) 858-531

#### 4. 투자허가서 발급 후 수속

#####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시(市), 성(省)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 허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법인계좌 개설

-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 법인도장 신청 (경찰서)

-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 ■ 토지사용권 신청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는 건축권을 신청하여야 함

####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음

####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법인이 직접 신문, 소개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음
- 회계장부를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함

## IV. 연락사무소 설립

-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 연락사무소 제출서류 (2,3번 공증필요, 공증 방법은 22p 참조)
  - 신청서: 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감사자료  
(회계감사자료 없는 경우, 재무제표(감사인 확인)도 가능)
  - 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장 될 사람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이 소장일 경우 ID Card)
  - 연락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 연락사무소 등록 조건
  -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 주소: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전화: (84.8) 823-9570
  - 팩스: (84.8) 822-4536
  - 이메일: tradehcmc@gmail.com
  - 홈페이지: [www.trade.hochiminhcity.gov.vn](http://www.trade.hochiminhcity.gov.vn)
  - 담당자: Ms. Nguyen Thi Mai Ngan, Manager  
Ms. Doan Thu Thuy, Vice Manager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 주소: 10 Le Lai St., Service of Trade
  - 전화: (84-4) 825 0472
  - 팩스: (84-4) 824 3984
  - 담당자: Mr. Do Quang Huy(Manager-Rep)

## V. 조세 제도

### 1. 법인세

-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됨
-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송금세 없음

### 2.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월 급여 기준)

| 베트남인    |       | 외국인     |       |
|---------|-------|---------|-------|
| 소득(만 동) | 세율(%) | 소득(만 동) | 세율(%) |
| 0~5     | 0     | 0~8     | 0     |
| 5~15    | 10    | 8~20    | 10    |
| 15~25   | 20    | 20~50   | 20    |
| 25~40   | 30    | 50~80   | 30    |
| 40 이상   | 40    | 80 이상   | 40    |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만을 납부하면 됨

### 3. 부가가치세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 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며, 표준세율은 10%임. 이외에 0%(수출품), 5%(비료, 식품, 석탄 등 필수품), 20%(보석, 귀금속 등)의 세율이 있음
-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조치 시행중

## VI. 노무 관리

### 1. 임금

#### ■ 임금 수준

-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투자 진출기업의 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약 월 70~80달러 수준 사무직의 경우 300~700달러 수준임

<지역별 최저 임금 (2006.2.1부 시행)>

(월 급여 기준)

| 지역구분                                                                                                            | 최저임금          |
|-----------------------------------------------------------------------------------------------------------------|---------------|
| 하노이시, 호치민시 각 군                                                                                                  | 87만 동(약 55달러) |
| 하노이시, 호치민시 각 현, 하이퐁시, 동나이성의 빈호아시, 바리아붕따우성의 붕따우시, 께닌성의 하롱시, 빈증성의 Thu Dau Mot,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 79만 동(약 50달러) |
| 기타 군, 시, 성                                                                                                      | 71만 동(약 45달러) |

자료원: 02/2006.1.6/ND-CP-수상령

####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마다 월급여의 50%. 단,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시에는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2. 노동 조건

### ■ 노동 시간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연 200시간이 상한 (노조합의 하에 300시간까지 연장가능)
-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최저 지급율
  - 통상 근무일: 150%
  - 주 휴일: 200%,
  - 공휴일: 300%

### ■ 휴가

-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2일이며, 근속 5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씩 추가

### ■ 해고

-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45일 전 통보해야 함

## 3. 사회보장제도

### ■ 사회 보험

- 기업은 종업원 급여의 15%를,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사회보험사무국에 납부함

### ■ 건강 보험

- 부담율: 월급여를 기준으로 기업 2%, 종업원 1%
- 지불처: 건강보험 사무소

## VII. 기타 정보

### 1. 법무 법인 및 컨설팅 업체

#### ■ 호치민 지역

##### • 법무법인 로고스

- 주 소: Rm 902B, 9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 1, HCMC
- 전 화: (84-8) 822-7161
- 팩 스: (84-8) 822-7162
- 이 메 일: joon19@gmail.com
- 홈페이지: www.lawlogos.com
- 담 당 자: 한윤준 변호사

##### • INVESTCONSULT GROUP

- 주 소: 15 Nguyen Thi Dieu St., Dist.3, HCMC
- 전 화: (84-8) 9304-869/70
- 팩 스: (84-8) 9304-871/2
- 이 메 일: hieu.tran@investconsultgroup.net
- 홈페이지: www.investconsultgroup.com; www.investconsultgroup.net
- 담 당 자: Mr. Ngo Sy Anh, Managing Director  
Ms. Tran Thi Xuan Hieu, Dty Managing Dir. •
- 주요업무: Legal/investment/management consultancy/  
Auditing&accounting/intellectualproperties/  
market researches

## ■ 하노이 지역

### ● YKVN Lawyers

- 주 소: Suite 301, 17 Ngo Quyen St., Hanoi, Vietnam
- 전 화: (84-4) 934-5410
- 팩 스: (84-4) 934-5412
- 이 메 일: hanoi.office@ykvn-law.com
- 홈페이지: [www.ykvn-law.com](http://www.ykvn-law.com)
- 담 당 자: Mrs. Diep Hoai Nam

### ● KIMCO Consulting

- 주 소: 3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Hanoi
- 전 화: (84-4) 831-5219
- 팩 스: (84-4) 831-5584
- 이 메 일: jskim242@hotmail.com
- 담 당 자: Mr. Joo Sung Kim

### ● INVESTCONSULT GROUP

- 주 소: No 26 Lane 41 Thai Ha St., Dong Da Dist., Hanoi
- 전 화: (84-4) 537-3262 ext 203
- 팩 스: (84-4) 537-3283
- 이 메 일: incom@hn.vnn.vn
- 홈페이지: [www.investconsultgroupservices.com](http://www.investconsultgroupservices.com)
- 담 당 자: Mrs. Le Minh Phuong, Deputy General Director

## ■ 유관 기관

### ● 한국상공인연합회 (KOCHAM) - 호치민

- 회 장: 이창근
- 주 소: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 전 화: (84-8) 837-9154
- 팩 스: (84-8) 837-9155
- 홈페이지: <http://www.kochamhcm.com>
- 이 메 일: kocham@hcm.vnn.vn

● 호치민 섬유협의회

- 회 장: 권홍식
- 홈페이지: <http://www.ktahcm.com>

● 한국상공인연합회 (KOCHAM) - 하노이

- 회 장: 조건환
- 주 소: 11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Hanoi
- 전 화: (84-4) 831-5281
- 팩 스: (84-4) 831-5271
- 홈페이지: <http://www.kochamvietnam.com>

● 베트남 북부지역 섬유협의회

- 회 장: 김한용
- 이 메 일: keeeun2004@yahoo.co.kr

### 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고문컨설턴트 명단

■ 호치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구 분    | 성명  | 현직법인명/직위               | 전화              | 이메일                           | 특기사항            |
|--------|-----|------------------------|-----------------|-------------------------------|-----------------|
| 고문변호사  | 한윤준 | 법무법인로고스<br>/변호사        | (84-8)822-7161  | joon19@gmail.com              | 변호사             |
| 고문컨설턴트 | 최 준 | VAC/회계사                | (84-8)910-0751  | choij@vacodtt.com             | Deloitte 회계사    |
| 고문컨설턴트 | 문성수 | 대한통운국제<br>물류/이사        | (84-8)821-3211  | kecihcm@hcm.vnn.vn            | 물류              |
| 고문컨설턴트 | 유명식 | Temsco/사장              | (84-8)518-0275  | msyou@hcm.fpt.vn              | 前한국건설사<br>협의회장  |
| 고문컨설턴트 | 노성호 | 신한비나운<br>/법인장          | (84-8)829-1581  | hcmc-cvb@hcm.vnn.vn           | 호치민투자<br>기업협의회장 |
| 고문컨설턴트 | 류재목 | I.S.A(섬유)/<br>사장       | (84-61)836-392  | vhchryu@hanmail.net           | 동나이투자<br>기업협의회장 |
| 고문컨설턴트 | 이용건 | Uni-Easter<br>(레미콘)/사장 | (84-650)791-112 | uniremiconblock@<br>yahoo.com | 빈중투자기업<br>협의회장  |

## ■ 하노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구분     | 성명                    | 현지법인명<br>직위             | 전화                        | 이메일                          | 특기사항        |
|--------|-----------------------|-------------------------|---------------------------|------------------------------|-------------|
| 고문변호사  | Diep Hoai Nam         | YKVN<br>/대표변호사          | (84-4)934-5410            | hanoi.office<br>@ykvnlaw.com | 베트남인        |
| 고문컨설턴트 | 김주성                   | KIMCO<br>Consulting     | (84-4)831-5219            | jskim242<br>@hotmail.com     | 일반<br>컨설팅   |
| 고문컨설턴트 | Le Chi Minh<br>Phuong | Invest Consult<br>Group | (84-4)537-3262<br>(ex203) | incom@hn.vnn.vn              | 베트남인        |
| 고문컨설턴트 | 홍정렬                   | 외환은행<br>부지점장            | (84-4)771-6781            | keb.hanoi@fpt.vn             | 금융          |
| 고문컨설턴트 | 장순봉                   | 석우건설<br>/사장             | (84-4)772-3860            | seogwoo@vnn.vn               | 건설/건축<br>부문 |

## 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서비스 내역

### ■ 호치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주 1회(매주 금요일) 사전 예약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질의 내용 사전 통보 후 대면 상담
  - 이메일: investhcm@kotra.or.kr
  - 팩스: (84-8) 822-3941
  - 담당자: 안유석 과장, 한상권 과장
  - 이메일 상담: joon19@gmail.com(한윤준 변호사)

### ■ 하노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YKVN Lawyers)와 대면 상담 (영어)
  - 질의 내용 사전 통보 후 대면 상담
  - 전화: (84-4) 946-0511

- 팩스: (84-4) 946-0519
- 이메일: keunhyungp@gmail.com
- 담당자: 박근형 차장

■ 베트남 투자뉴스 Weekly (매주 E-mail Push Service)

- 베트남 주요 경제기사 번역 등
- 신청 방법: 연락처(Email 등) 명기 후 아래 주소로 신청
  - 호치민 지역(남부지역): investhcm@kotra.or.kr
  - 하노이 지역(북부지역): keunhyungp@gmail.com

## 5. 베트남 무역관 홈페이지 주요 정보

(www.kotra.or.kr → 초기화면 왼쪽 해외무역관 바로가기 → 호치민 or 하노이무역관 클릭 → 초기화면 왼쪽 자료방에서 무료 Download 가능)

- 베트남 투자법령집(투자법/기업법 한글 번역본)
- 남부지역 공단정보
- 법무법인/컨설팅사/회계법인 리스트
- 헤드헌팅사 리스트
- Market Research사 리스트
- 기타 투자관련 정보

## 6. 유료 발간 책자 (한국 대형서점에서 구입가능)

- 베트남 비즈니스로드맵 증보판 (총 850여 페이지, 38,000원)
- 베트남 투자 A to Z (총 150여 페이지, 10,000원)

## 국가 개요

-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면 적: 329,560km<sup>2</sup> (한반도의 1.5배)
- 수 도: 하노이(Hanoi)
- 주요도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 행정구역: 64개의 성(省), 5개 특별시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컨터)
- 인 구: 8,520만명 (2006년 추정)
- 민족구성: 킨(89%), 따이(2.0%), 타이족(1.6%),  
호아족(1.5%), 기타 소수민족
- 언 어: 베트남어 (일부 산악족은 고유 언어 사용)
- 종 교: 불교(60%), 카톨릭교(20%), 기독교(5.0%),  
까오다이교(2.5%), 호아호아교(2.5%) 및  
기타 토속종교
- 기 후: 북부-아열대, 남부-열대몬순
- 화폐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 환 율: VND 16,010 / US\$ 1 (2007.1.1일 현재)
- 시 차: GMT + 7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

|              |    |
|--------------|----|
| 베트남투자법 ..... | 41 |
|--------------|----|

# 투자법

2001년 12월 25일 제10대 국회 제 10차 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은 투자활동에 대해 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규정 범위

본 법은 경영 목적의 투자 활동,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투자 우대 및 장려 분야, 베트남에서의 투자 및 베트남의 해외  
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침에 대해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 및 베  
트남의 해외투자
2. 투자활동에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

### 제3조 용어 설명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투자**는 투자자가 본법 및 관련 법의 규정들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  
기 위해 각종 유형 또는 무형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이다.

3.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지분,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증권투자기금의 매입 또는 기타 금융중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투자로, 투자자가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형식이다.
4.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기업
  - b) 합작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사, 합작사 연합
  - c)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자본 기업
  - d) 가정기업, 개인기업
  - e) 외국의 개인 혹은 단체, 재외 베트남 교포,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 f)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각 단체
5.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외국투자자본기업**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지분의 매입, 합병, 인수한 베트남 기업으로 구성된다.
7. **투자활동**은 투자 준비, 투자 진행 및 투자프로젝트 관리로 이루어지는 투자 과정에서의 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8. **투자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자본 투자 제안서 모음을 말한다.
9. **투자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 투자형식에 따른 투자활동들을 실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들을 말한다.
10. **국가자본**은 국가 예산에서 출현된 개발투자자본,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자본, 국가개발투자금융 및 기타 국가투자자본을 말한다.
11. **투자주**는 자본을 소유한 개인 및 단체 혹은 자본 소유주를 대리한 자 및 자본을 차입한 자, 투자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자본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외국투자**는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내투자**는 국내 투자자가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외투자**는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자금과 기타 자산을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건부 투자분야**는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6. **경영협력계약**(이하 BCC계약으로 칭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을 말한다.
17. **건설-운영-양도계약**(이하 BOT계약으로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18. **건설-양도-운영계약**(이하 BTO 계약으로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19. **건설-양도 계약**(이하 BT라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20. **공업단지**는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공업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정된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1. **수출가공단지**는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2. **첨단기술단지**는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기업 양성, 첨단기술 인력 교육,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을 말한다.
23. **경제특구**는 투자자들의 투자 및 경영에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주어진 독립된 경제 공간으로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으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을 말한다.

#### 제4조 투자 관련 정책

1. 투자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 산업, 무역에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자율권과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2. 국가는 모든 경제 분야의 모든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 및 외국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국가는 투자자의 자산, 투자 자본, 소득, 법적 권리,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투자활동의 장기적 존재 및 발전을 인정한다.
4.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투자관련 국제 조약들을 이행한다.
5. 국가는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 제5조 투자법, 국제조약, 외국법률, 국제투자 관행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본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서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외국 투자활동에 대해서,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 관습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각 측은 외국법률 및 국제투자 관행의 적용에 대해 계약서 상에서 합의할 수 있다.

## 제 2 장 투자 보장

## 제6조 자본과 자산에 대한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과 투자 자본은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조치로 압류되지 않는다.
2. 국방, 안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국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획득하거나 징발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받거나 피해를 배상 받는다. 보상 또는 배상 지급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자를 보장하고 투자자간 차별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불할 어떠한 보상 또는 배상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이루어질 것이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강제적인 인수와 사용의 절차 및 조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는 투자활동 기간 중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의 기술이전에 관한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 제8조 시장 개방 및 무역에 관한 투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다음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한다.

1.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일정에 따른 투자 시장의 개방
2. 투자자들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요건들
  - a) 베트남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구매 또는 사용; 특정 국내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사로부터의 의무적 구매
  - b)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 c) 수출 상품의 수량 및 가치에 상응하는 수량 및 가치의 상품 수입; 수입에 필요한 외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상품 수출을 통한 외환 균형 유지
  - d)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 e) 베트남 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일정 수준 및 가치 달성
  - f) 국내 또는 외국의 특정 장소에서의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 g) 특정 장소에의 본사 설립

## 제9조 자본과 자산 해외 송금

1.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a)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

- b) 기술,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따라 받은 보수
  - c)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 d) 투자 자본 및 투자 청산 후의 자금
  - e)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타 현금 및 자산
2.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재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상기 자금의 송금은 투자자가 선택한 상업은행(시중은행)이 제시한 환율에 따른 국제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4. 투자활동 관련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 가격, 수수료 및 요금의 동일 적용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 수수료 및 요금을 적용 받는다.

#### 제11조 법률 및 정책 변화의 경우 투자 보장

1.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혜택과 인센티브가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혜택과 인센티브 보다 더 나은 경우, 투자자는 그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법률, 정책에 따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2.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혜택에 대한 침해가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의 발효일 보다 먼저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인센티브)들을 보장받을 수 있거나, 다음의 조치들 중 하나, 일부 또는 전체에 의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a) 혜택 및 인센티브의 계속적 향유
  - b) 과세 소득의 손실 부분 공제

- c) 투자프로젝트 운영 목표의 변경
  - d)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3. 법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이행 약속에 근거하여, 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 제12조 분쟁 해결

1.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협상, 화해, 중재 또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2.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 간 혹은 국내 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베트남 중재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다.
3. 분쟁의 한 당사자가 외국 투자자이거나 외국투자자본기업인 경우, 또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법원 혹은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 a) 베트남 법원
  - b) 베트남 중재기관
  - c) 외국 중재기관
  - d) 국제 중재기관
  - e) 양측의 합의로 설치된 중재기관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상 특정한 조항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 제13조 투자 및 경영의 자율권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투자 분야, 투자 형식, 자본 동원 방식, 투자 지역, 투자 규모, 투자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운영 기한에 대한 선택권
2. 1개 혹은 여러 분야와 직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법 규정에 다른 기업 설립, 등록을 마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결정권

#### 제14조 투자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각종 금융, 지원기금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법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천연 자원 사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
2.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기계, 설비의 임대 혹은 구매
3. 국내 인력의 고용, 경영상 혹은 생산에 필요에 따른 외국 관리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 투자 활동과 관련한 수출입, 마케팅 및 광고, 가공 및 재가공 권리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투자활동을 위한 장비, 기계, 원료, 자재, 상품에 대한 직접 수입 및 위탁 수입, 또는 상품의 직접 혹은 위탁 수출 및 상품의 판매 권한
2. 자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 권한, 광고 사업권을 가진 단체와 직접적 광고 계약 권한
3. 상품의 가공 및 재가공, 가공 및 재가공에 대한 국내에서의 발주, 무역법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의 가공 발주 권한

### 제16조 외국환 매입권

1.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 업무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환 거래, 자본 거래 및 기타 거래를 위해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 폐기물처리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외환 균형을 보장하거나 지원한다.

### 제17조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조정 권리

1. 투자자는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만일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자는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및 조정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조건들을 규정한다.

### 제18조 토지 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투자프로젝트를 보유한 투자자나 기업은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과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9조 투자자의 기타 권리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혜택을 받을 권리
2.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3. 투자 관련 정책, 법률 자료, 투자활동 관련 국가경제 데이터, 각 경제 분야에 대한 데이터, 투자활동 관련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투자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4.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법률 침해 행위에 대한 청원, 고소 또는 제소 권리
5.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

#### 제20조 투자자의 의무

1. 투자 절차 관련 법 규정 준수,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내용 및 투자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 등록 내용의 성실성, 정확성 및 각종 인증 서류들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법이 규정하는 재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3. 회계, 감사, 통계에 대한 법 규정의 준수
4. 법에 규정된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의 인품과 명예 존중,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5.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6.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7.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제 4 장 투자 형식

#### 제21조 직접투자 형식

1.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2.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3.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4. 경영개발투자
5.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6.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7. 기타 형태의 직접적 투자

#### 제22조 경제단체 설립 투자

1. 본 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 형식들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제단체들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a)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b)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c)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d)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경제 단체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제단체들 이외에, 국내 투자자는 합작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합작, 합작사 연합의 설립과 법률 규정에 따른 가정기업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 제23조 계약에 따른 투자

1.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 대상 및 내용, 경영 기간, 각 측의 권리, 의무, 책임, 각 측의 협력 관계,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각 측이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명기한다.  
 유전의 탐사, 조사, 개발을 위한 BCC 계약 및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생산물 분배 형식의 계약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정부는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분야, 투자프

로젝트 진행 조건, 절차, 수속, 투자프로젝트 진행 방식 및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측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 제24조 경영 개발 투자

투자자는 다음 형식들을 통해 경영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1. 경영 규모의 확대, 생산 및 경영 능력 향상
2.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 제25조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합병

1.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일부 분야, 부문, 업종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비율은 정부가 정한다.

2. 투자자는 기업 및 지사를 인수, 합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본법 경쟁에 관한 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 간접투자

1. 다음의 형식들에 따라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a)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 b)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c)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2. 간접투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 5 장 투자 분야,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 제 1 절 투자 분야 및 지역

#### 제27조 투자 우대 분야

1.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첨단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제28조 투자 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 제29조 조건부 투자 분야

1. 조건부 투자분야의 구성;
  - a)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b) 금융 및 은행 분야
  - c)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d)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e)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f) 부동산 사업
  - g)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h)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i)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2. 본 조의 1항에 규정된 분야들 이외에,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에서 이행 약속한 조항에 속한 투자 분야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추가로 포함된다.
  3. 외국 투자자본 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활동 과정 중에 이미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 분야의 목록에 새로이 포함될 경우, 투자자는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4.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요구에 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조항들과 부합되도록, 정부는 외국 투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의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해 규정한다.

### 제30조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2.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3.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4.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반입한 유독성 폐기물 프로젝트,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제31조 우대 투자 분야 및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목록 공포

1.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방향 및 계획,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투자우대 분야, 투자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금지 분야의 목록을 공포 혹은 개정, 보완한다.
2. 각 부(部) 및 부급 기관, 성(省)인민위원회, 중앙 직할시(市)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칭함)는 법률의 규정을 벗어난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우대 분야 관련 규정을 확정, 공포할 수 없다.

## 제 2 절 투자 우대

## 제32조 투자 우대 대상 및 조건

1. 본 법 제27조와 28조에 규정된 투자 우대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본 조의 1항에 규정된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및 생산 능력 향상, 기술 혁신, 상품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 제33조 세금 우대

1. 본 법의 32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기 경제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4.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 제34조 손실 이월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5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 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제36조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1.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되거나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7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토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관은 확정된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기간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
2. 투자우대 분야 혹은 투자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 제37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및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들을 규정한다.

### 제38조 투자우대 시행 수속

1. 본 법의 제45조에 규정된 투자 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투자 등록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속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우대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경우 투자등록 수속을 밟아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우대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2. 본법의 47, 48, 49조에 규정된 투자심사 분야에 속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우대사항을 투자증명서에 명기한다.
3.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투자자본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투자 우대 사항을 명기한다.

### 제39조 우대 혜택 확대 적용의 경우

특히 중요한 어느 분야 혹은 특정한 지역, 경제특구의 개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법에 규정된 투자 우대 정책들 이외의 기타 투자 우대 혜택들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제 3 절 투자지원

#### 제40조 기술이전 지원

1. 국가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투자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각 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여건을 조성한다.
2. 국가는 선진기술 및 원천기술, 신상품의 생산, 상품의 생산성·경쟁력·품질의 향상과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의 베트남 이전을 장려한다.

#### 제41조 교육 지원

1. 국가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자본 출자,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인력교육 지원기금의 설립을 장려한다.  
기업의 교육경비는 합리적 경비로 계산되고 법인세 산출시 근거로 활용된다.
2. 국가는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업들의 노동자 교육활동의 예산을 지원한다.

#### 제42조 투자관련 서비스 장려 및 지원

국가는 다음과 같은 투자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을 지원, 장려한다.

1. 투자 자문, 관리 자문
2. 지적재산권 자문, 기술 이전 자문
3. 직업 교육, 기술 교육, 관리 노하우 교육
4.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과학기술 정보, 기타 기술 및 경제, 사회 정보의 공급

5. 마케팅, 투자 및 무역 촉진
6. 사회단체, 사회-직업 단체의 설립, 참여
7.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실험 센터의 설립

#### 제43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1.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련 종합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각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내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부 지역에 기술 기반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을 건설한다.
2.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경제, 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국가가 일부 자본을 지방에 지원하여,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투자자와 함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는 국가 예산 및 우대금융에서 출현한 자본으로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의 기술기반 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개발투자를 위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강구한다.

#### 제44조 입국 및 출국 비자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투자자, 전문가, 기술자와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이때 비자의 최장 발급기간은 5년이다.

## 제 6 장 직접투자활동

### 제 1 절 투자수속

#### 제45조 국내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DN) 이하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2.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 이상 3,000억 베트남동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3. 투자등록 내용의 구성;
  - a) 투자자의 법적 자격
  - b)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 c) 투자 자본, 프로젝트 시행 계획
  - d) 토지 사용 면적 및 환경보호에 대한 약속
  - e) 투자 우대건의 사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 제46조 외국 투자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록 수속

1.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하,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 투자 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2. 투자등록 서류의 구성
  - a) 본법의 45조 3항에 규정된 서류 및 내용
  - b)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
  - c) 합작 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회사 정관 (있는 경우)

3.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갖춘 투자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47조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1.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인 국내의 투자프로젝트 혹은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투자심사는 충분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는 있으나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국회가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결정하며, 정부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수속, 절차 및 투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4. 정부는 투자증명서 심사 및 발급 관련 권한 위임에 대해 규정한다.

#### 제48조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이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심사 절차

1. 투자 심사 서류
  - a)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b)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 c)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 d) 프로젝트의 목적, 투자 장소, 투자 규모, 투자 자본, 투자 이행 계획, 기술설명서, 환경설명서로 구성된 경제기술 설명서
  - e) 외국투자자는 위 항목의 서류와 더불어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 (있을 경우) 등이 필요하다.
2. 심사 내용

- a) 기술 기반시설 계획, 토지사용 개발 계획, 건설개발 계획, 광산 및 기타 자연자원 이용 개발 계획과의 적합성
- b) 토지사용 면적
- c) 프로젝트 이행 계획
- d)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 제49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절차

1. 투자자본 3,000억 베트남동 이하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절차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5조 3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외국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6조 2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심사
2. 투자자본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절차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본법 48조 1항에 규정된 심사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및 본법의 48조 2항에 규정된 내용 심사

#### 제50조 경제단체 설립 관련 투자 절차

1.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 심사 또는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되어 이미 설립된 경제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경제단체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해당 프로젝트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경제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국내투자자는 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본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절차를 진행한다.

#### 제51조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1.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기간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변경 내용을 결정하고, 변경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등록한다.
  - b) 투자심사 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별로 투자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변경 사유, 기(既) 심사 내용과 변경 신청 내용상의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변경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변경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 제52조 외국투자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은 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부합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활동 기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증명서 상에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을 명기한다.

## 제53조 프로젝트 수립, 투자 결정, 투자 심사에 대한 책임

1.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하며, 투자 등록 내용 및 투자 관련 서류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된 투자 관련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2. 프로젝트의 수립, 투자 결정, 검토, 투자 증명 관련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제안과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 제54조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개발 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선정한다.

## 제 2 절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 제55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1. 토지 사용의 요구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 지역 관할 토지 관리 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의 교부, 임대 관련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한다.

## 제56조 건설 부지의 준비

1.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채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력으로 보상 및 부지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재 법적 해결권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지를 교부하기 전에 부지 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가 가능하고, 개인 또는 세대 또는 경제단체의 토지 사용권을 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

#### 제57조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자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

#### 제58조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1.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는 기술 설계, 예산, 총 예산에 대한 수립, 심사 및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투자자는 환경 보호 및 시설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59조 기계, 설비의 감정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고정자산으로 납입되는 수입 기계, 설비의 가치 및 품질을 감정할 책임을 진다.

## 제60조 베트남 시장에서 상품의 소비(판매)

1.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할 수 있고, 베트남 내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의 상품을 소비(판매)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 판매 가격은 국가 관계 기관이 공포하는 가격 체계에 따른다.

## 제61조 외환계좌, 베트남동(VND) 계좌

1.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 받은 은행에서 외환 계좌 및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2. 국내 은행 및 외국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 제62조 보험

투자자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보험 사업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 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3조 관리 단체에 대한 용역

1.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관리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들에 대해 투자 활동 및 경영활동 관리를 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계약서 내에 명기된 관리 활동 제반 문제들과 연관된 관리업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관리업체는 투자 관리와 경영활동 관리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며, 계약서 상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베트남 법률의 준수해야 하고, 계약서 범위 밖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4조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

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투자증명서가 발급된 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한다.

#### 제65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따라 이행된다.

1. 투자증명서 상 명기된 활동 기한이 종결된 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 명기된 활동 종결의 조건 혹은 투자 이행 계획에 관한 각 투자자들 사이의 합의, 약속에 따라 종결된 경우
3. 투자자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경우
4. 법률 위반으로 인한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 중재기관의 결정, 판결에 따른 활동 종결의 경우

#### 제66조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와 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증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의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투자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차입자본, 원자재의 공급, 상품의 소비(판매), 지불,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을 담당할 관할 국가기관을 지정한다.

## 제 7 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 제67조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 관리

1.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계획 및 전략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반드시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 종류별로 적합한 관리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투자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3. 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을 투자 또는 기타 경제 구성원들과의 합자, 제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가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투자 단계별로 각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시키며, 국가자본 사용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국가 관리의 권리 위임 및 업무 분장을 시행한다.
5. 투자는 법률 및 이행 진도 계획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투자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낭비, 비공개, 손실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 제68조 경제단체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1. 국가 예산에서 출현한 투자자본의 경제단체에 대한 출자는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는 국영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1인의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전환한 국영기업 혹은 신설 주식회사에서 국가자본의 소유권을 대리한다.
3. 정부는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의 활동, 조직을 규정한다.

### 제69조 공익 활동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1. 국가는 계획의 배정, 상품의 발주 또는 입찰 실시를 통해 공익 상품, 서비스의 공급 및 생산에 투자한다.

2.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 구성원에 속한 모든 개인, 단체는 공익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생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공익 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공익 상품 및 공익 서비스 관련 목록을 작성, 공포한다.

#### 제70조 국가 개발 투자 금융자본을 통한 투자

1. 국가개발 투자금융 자본이 사용되는 대상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대출 자본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경제 프로그램 또는 일부 중요한 분야와 부문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들이다.  
국가개발 투자금융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 방안, 차입자본 상환 방안에 대해 대출 담당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의 개발투자 금융자본으로부터 지원되는 투자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시기별 금융지원 수혜 대상 및 대출 조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 제71조 국가자본이 사용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를 위임 받은 개인, 단체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위임 받은 개인과 단체는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자본의 보전 및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서 국가의 지분을 대리하는 개인, 단체는 국가자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 제72조 투자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연기, 정지, 파기

1. 투자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사항을 밝히고 관할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만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경우 투자주는 반드시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프로젝트 내용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자주는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자프로젝트는 연기, 정지, 파기될 수 있다.
  - a) 투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투자주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할 국가기관이 문서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 b) 프로젝트 목적을 변경하였으나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문서상으로 통보 받지 못한 경우
4. 투자프로젝트를 연기, 정지 혹은 파기를 결정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 제73조 프로젝트 진행 입찰자의 선정

국가의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자문, 물품의 구매, 건설을 담당할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 8 장 해외투자

#### 제74조 해외투자

1. 베트남 법 및 투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2. 국가는 해외투자 활동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해외 베트남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3. 모든 경제구성원에 대한 평등, 동등 대우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는 각종 금융자본들에 대한 투자자의 원활한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 특별장려 분야에 속한 해외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본 차입을 보증한다.

#### 제75조 해외투자 장려 분야,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는 노동자 송출 수요가 큰 분야, 베트남 전통 분야와 업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투자국의 자연자원개발 분야, 수출 가능성 및 외화 획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베트남의 경제단체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한다.
2. 국가기밀, 안보, 국방, 역사, 문화,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는 해외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 제76조 해외투자 조건

1. 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a) 해외 투자프로젝트
  - b) 국가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 c)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발급한 투자증명서
2. 간접투자 형식에 따른 해외투자는 은행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 국가자본을 사용하여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자본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7조 해외투자자의 권리

1.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투자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후,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 및 합법적인 자산을 해외

- 로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사항 관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는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채용할 수 있다.

#### 제78조 해외투자자의 의무

1. 투자국의 법률 준수
2. 해외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이익의 법 규정에 따른 본국 송금
3. 해외투자 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정기보고 이행
4. 본국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5. 해외투자 종결시 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자본 및 합법적 자산의 본국 이전
6. 투자자가 본 조의 2항과 5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한 각종 소득, 이윤, 자산, 자본의 본국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9조 해외투자 수속

1. 해외투자의 구성
  - a)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 이하의 프로젝트로 투자등록 프로젝트
  - b)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 이상의 프로젝트로 투자심사 프로젝트
2. 투자 등록 및 투자 심사 신청
  - a) 투자 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b) 투자 심사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증명서 발급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해외투자 관련 장려, 금지, 제한 분야, 투자 조건,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정책 및 해외투자의 절차, 수속, 관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 9 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 제80조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1. 개발 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도
2. 투자 관련 법률 규범 문건들의 공포 및 이행
3.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안내, 투자자의 요구 사항 및 장애사항 해결
4. 투자증명서 발급 및 회수
5. 투자활동 안내, 평가, 감독, 감사 및 청원, 고소의 해결, 투자활동에 대한 포상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6. 투자활동과 관련된 인력자원 교육 활동
7. 투자 촉진 활동

### 제81조 투자 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

1. 정부는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통일 적용한다.
2. 계획투자부는 정부의 투자활동 관련 국가관리 업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각 부처, 부급 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범위 내에서 투자 관련 국가관리 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실행한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투자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을 진다.

### 제82조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관리

1. 정부는 개발 계획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의 수립, 보고, 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투자프로젝트는 기술-산업기반시설 개발 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을 준수해야만 한다.  
지역 개발 계획, 분야별 개발 계획, 생산품 개발 계획은 본법 27, 28, 29, 30조에 각각 규정된 투자우대 분야, 투자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및 투자 금지 분야와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3. 개발 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은 매스컴을 통해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공개하고 공포할 책임이 있다.
4. 본 조에 규정된 기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중개자로서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통보해 줄 책임을 진다.

#### 제83조 투자 촉진

1. 각급 국가기관들의 투자 촉진 활동은 정부 규정을 따른다.
2. 투자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84조 투자 활동에 관한 감독 및 평가

1. 각 급 투자관련 국가 관리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평가 및 보고를 시행한다.
2. 투자활동 감독, 평가의 내용 구성
  - a) 법적 권한에 따른 법률 안내 문건 공포 및 투자 관련 법의 규정의 이행
  - b) 투자증명서의 규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상황
  - c) 국가, 각 부처, 각 지부, 각 지방 및 각 위임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 d) 투자 장애요소 해결, 투자법 위반 행위 처리방안에 대한 건의 및 투자 평가결과에 대한 동급 국가관리기관과 상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대한 보고

#### 제85조 투자활동 감사

1. 투자활동 감사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 관련 법, 정책 시행에 대한 감사
  - b) 투자 관련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방지, 법적 권한에 따른 처리 또는 관할 국가기관에 위반 행위 처리 건의
  - c) 투자 관련 청원, 고소에 대한 조사,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관련 청원, 고소 해결 건의
2. 투자 감사의 조직과 활동은 감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86조 청원, 고소, 제소

1. 법 규정에 따라 개인은 청원, 고소, 제소의 권리를, 단체는 청원, 제소의 권리를 가지며,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청원, 고소, 제소의 신청 및 청원, 고소, 제소의 해결은 법 규정을 따른다.
2. 청원, 고소, 제소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 또는 단체는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행정결정을 시행해야만 하며,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고소,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결정과 판결에 따른다.
3. 관할 각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각 단체, 개인의 청원, 고소를 해결할 책임을 진다. 자신의 법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청원,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법적 해결 권한을 가진 관할 국가기관으로 이를 적시에 송부하며 고소, 청원자에게 문서로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87조 위법 처리

1. 본 법 및 투자관련 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 조치, 행정 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된다. 만일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어려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투자자의 요구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거나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각종 공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 조치 또는 형사 기소한다.

## 제 10 장 부 칙

## 제88조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 적용

1. 본 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외국 투자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투자 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투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투자등록을 원하는 경우 투자증명서 교환 교부 수속을 밟으면 된다.
2. 본 법의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완료한 국내 프로젝트는 투자등록 수속 또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투자 관리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 제89조 시행 효력

본 법은 2006년 7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법은 1996년 베트남 외국투자법, 2000년 일부 보충 및 개정된 외국투자법과 1998년 국내투자 촉진법을 대체한다.

정부는 본 법의 시행령 및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한다.

본 법은 2005년 11월29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1대 국회 No.59/2005/QH11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투자법 시행령<sup>1)</sup>

투자법의 일부 조항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안내

-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 2005년 11월 29일자 투자법에 근거하며
- 계획투자부<sup>2)</sup> 장관의 제안을 검토함.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적용 범위

1. 본 시행령은 2005년 11월 29일자 투자법의 일부 조항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안내에 관한 것으로, 경영을 목적으로 한 투자활동,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 투자장려 및 우대, 베트남 투자에 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한다.
2. 해외투자 활동, 건설-경영-양도 계약, 건설-양도-경영 계약, 건설-양도 계약 형식의 투자활동은 본 시행령 이외 별도의 정부 지침에 의한다.
3. 지분,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각종 증서 등의 매입, 증권투자나 중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자와 같은 형태의 간접투자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증권관련 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수 투자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1) 투자법 시행령은 2006년9월22일 확정되었다. (문서번호 108/2006/ND-CP)

2) 베트남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이다. 동 부처에 대한 한글명은 영문명을 그대로 따라 계획투자부로 사용한다

## 제2조 용어 설명

본 시행령에서, 아래의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투자자본은 직·간접인 투자활동을 위한 베트남동,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 및 기타 합법적 자산을 의미한다. 합법적 자산은 다음과 같다.
  - a) 주식, 주권 또는 투자자의 기타 각종 증서
  - b) 채권(bond), 부채(debt) 혹은 기타 형태의 채권
  - c) 계약상 권리, 턴키(turnkey) 방식 계약, 건설계약, 관리계약, 제품 또는 총매출 배분 계약
  - d) 채무이행 요구권, 계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
  - e) 상표(트레이드 마크), 산업디자인, 특허, 상품명, 출처 혹은 원산지명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및 기술자산
  - f) 자원 탐사 및 개발 등의 채굴·개발 양도·양여권
  - g) 부동산 관련 임대권, 양도권, 출자권, 또는 담보권 등의 각종 부동산에 관한 권리
  - h) 이윤, 주식 배당금, 판매수익 등의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
  - i) 기타 법률이 규정하거나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 각종 자산 및 권리
2. 신규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최초로 전개하는 프로젝트 혹은 투자자가 활동 중인 프로젝트와는 독립된 별도의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
3. 투자프로젝트 확대란 시행중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가 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량·용량 제고, 사업능력 확장, 기술 혁신, 제품 품질 개선, 환경오염 감소 등을 의미한다.
4. 베트남에 최초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 최초로 경제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를 의미한다.

## 제3조 투자법, 국제조약, 외국법, 국제적 투자관행의 적용

1. 투자법, 국제조약, 외국법, 국제적 투자관행은 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베트남이 국제조약에 가입한 이후에 공포된 베트남법이 국제조약과 비교하여 편리할 경우, 투자자는 국제조약과 베트남법 중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4조 사용 언어

투자 프로젝트 서류 및 베트남 기관에 보내는 공식문서는 베트남어로 하며,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서류는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외국어로 한다. 외국어와 베트남어로 작성된 문서가 상이할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된 문서에 따른다.

## 제 2 장 투자 형식

#### 제5조 투자 형식

투자자는 투자법 제 21, 22, 23, 24, 25, 26조에서 규정한 투자형식에 따라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제6조 경제단체(economic organization) 설립과 투자프로젝트 시행

1. 경제단체 설립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자법과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 절차와 경제단체설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길 요청하였을 경우, 본 시행령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2. 베트남에 최초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 수속절차를 진행한다. 투자승인 확인서는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의 기능을 한다.

3. 베트남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투자자의 경우,
  - a) 신규 경제단체 설립 없이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절차를 밟는다.
  - b) 신규 경제단체 설립이 수반되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본 조 2항에 따라 경제단체 설립을 위한 수속절차와 투자 수속을 진행한다.

#### 제7조 투자자의 100% 자본에 의한 경제단체 설립

1.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sup>3)</sup>,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3. 100%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져,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 제8조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에 의한 합작 경제단체 설립

1.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국내·외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합작 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법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할 수 있다.

3) Partnership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괄하는 「합작회사」로 번역한다.

## 제9조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

1. 경영협력계약이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 (이하 계약 당사자라 함) 간 체결된 계약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 결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2. 생산물의 분배계약 형식에 따른 채광,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기타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3.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투자자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은 경제계약에 관한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4.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조정위원회는 경영협력계약계약당사자의 의결기관은 아니다.
5. 외국투자자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을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투자승인 확인서와 경영협력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10조 출자, 주식 매입 혹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의 형식을 통한 투자

1.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위해 타 기업에 출자, 주식 매입 또는 기업을 인수합병 할 권리가 있다. 또한, 출자, 주식 매입, 기업 인수 및 합병하는 하는 일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2.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투자형식을 위배하거나 매입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회사나 지사를 인수할 경우, 기업법과 경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 제11조 투자 및 사업 자주권

1. 투자자는 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와 사업에 대한 자주권을 가진다. 단, 법률이 규정하는 투자 및 사업 불허 산업 및 분야는 제외한다.
2.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의 경우, 투자자는 법률규정에 따른 투자조건을 갖추었을 때, 투자와 사업에 대한 자주권을 가진다.

#### 제12조 신용 자본, 토지, 자원 접근 및 사용권

투자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신용자본, 토지 그리고 자원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3조 노동자 고용권, 임금, 노동조합의 활동

1. 투자자는 국내노동자를 고용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 상의 요구에 따라 외국기술자, 전문가, 해외근로자를 고용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2.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3. 기업 내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제14조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에 관한 권리

1. 투자자는 설비, 기계, 원자재, 제품을 직접 수출 또는 수입 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법 제15조와 상법에 따라 투자프로

- 젝트 진행과 관련한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업무를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투자법, 상법 그리고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입, 유통,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제15조 수출가공단지 및 수출가공기업과 내수시장 간의 제품 판매권

1. 영업활동 과정 중, 수출가공기업은 생산, 제조, 가공, 조립, 수출 등을 위해 베트남 국내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수출 금지 제품은 제외한다.
2. 수출가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한해 베트남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a) 수입금지 제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으로 수출가공기업의 생산품
  - b) 베트남시장에 수요가 발생한 제품으로 수출가공기업의 생산품
  - c)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품 및 폐자재,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 금지된 폐품 및 폐자재 목록에 속하지 수입 허가 폐품 및 폐자재
3. 수출가공단지 및 수출가공기업과 내수시장 간의 제품 매매 관계는 무역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 계좌 개설 및 외환 매입권

1.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금융기관에 베트남동 계좌와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해외 은행의 계좌 개설과 폐쇄 조건 및 절차는 은행법 외환관리법 그리고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및 기타 거래법을 준수하는, 외환사업권을 획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
3. 정부는 허가된 금융기관이 아래와 같은 분야의 중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투자자의 외화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외화를 균등하게 지원한다.

- a) 에너지 프로젝트
  - b)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 c) 교통 기반시설의 건축 및 개발
4. 본 조 3항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수상은 투자자의 균등한 외화지원 보장에 대해 결정하며, 상기 사항을 투자승인 확인서에 명시한다.

#### 제17조 토지기금 접근, 토지 및 토지 관련 자산에 사용권 담보

1.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개발을 위한 토지기금에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승인한 토지 사용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을 공개·공고한다.
2.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해 토지법과 관련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각종 금융기관에 토지 사용권과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 제18조 투자자의 기타 권리

1. 투자자는 투자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 우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투자자는 차별 대우 금지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투자 형식, 투자 규모, 투자자본 비율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4. 투자자는 투자 관련 정책, 법률 자료, 투자활동 관련 국가·지역별 경제 자료, 투자활동과 관련한 기타 경제-사회 정보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법률의 규정에 따른 초안 작성시 투자관련 정책과 법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투자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 혹은 조직이 투자법을 위반했을 경우, 청원, 고소, 제소할 권리가 있다.
7. 투자자는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권리와 기반시설 사업 투자

1. 본 시행령 제11, 12, 13, 14, 15, 16, 17, 18조에서 규정한 권리 외에도,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생산·경영활동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투자자는 서비스 및 제품의 생산·경영활동을 위해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건설된 공장, 사무실, 또는 물류창고를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 b)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 교통 시스템, 전기·하수도 공급, 통신서비스, 오·폐수·폐기물 처리,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기타 서비스
  - c) 투자자는 토지법과 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양수하며, 토지를 임대하거나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토지를 재임대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단지 내에 공장, 사무실, 또는 생산, 서비스, 경영활동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경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 a) 임대 또는 판매를 위해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에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를 건설한다.
  - b) 토지 임대료, 기반시설이 구축된 토지 재임대료, 공업단지, 수출가공

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의 기반시설, 서비스시설, 공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판매가액, 서비스이용요금 등을 결정한다.

- c) 투자자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 d) 투자자는 토지법과 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 받으며,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토지를 재임대 받을 수 있다.

#### 제20조 법률과 정책 변경시 투자 보장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1. 신규 법률과 정책이 제정·공포되어, 신규 법률과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누렸던 합법적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투자자는 투자승인 확인서를 통하거나, 아래와 같은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
  - a) 기존의 권리와 우대혜택을 계속 누린다.
  - b) 과세소득에 미친 손실을 공제 받는다.
  - c) 프로젝트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 d) 필요시, 배상을 검토한다.
2. 본 조 1항 d)에서 언급한 배상의 경우, 신규 법률 및 정책의 변경에 의해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간은 수상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여, 수상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1조 투자자의 의무와 책임

1.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 a) 투자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투자등록 내용 및 투자승인 확인서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투자활동을 전개할 의무

- b) 법 규정에 따라 재정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
  - c) 회계, 회계감사 및 통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d) 보험법,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노동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
  - e) 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f)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수행할 의무
2.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투자등록 내용과 투자프로젝트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투자프로젝트 서류에 속하는 문건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
  - b) 본 시행령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보고하며, 보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 c)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국가관리기관이 투자활동에 대해 검사,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책임.

## 제 4 장 투자분야·지역, 투자우대·지원

### 제 1 절 투자 우대

#### 제22조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

1. 투자 우대 분야에는 투자 특별 우대 산업 및 분야와 투자 우대 산업 및 분야가 포함되며,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A에 규정하였다.
2. 투자 우대 지역이란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말하며,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B에 규정하였다.
3.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A의 투자 특별 우대 산업 및 분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B의 경제-사

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와 같이 투자 우대 혜택을 받는다.

#### 제23조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불허 분야

1.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불허 분야는 투자법 제29와 30조에 규정하였다.
2.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은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C에서 규정하였으며, 투자 불허 분야 목록은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D에 규정하였다.

#### 제24조 투자 우대 대상

1. 본 시행령에서 규정된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투자자는 투자법과 관련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혜택을 받는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 우대는 본 시행령에서 규정한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일 경우, 투자법 제24조에 명시한 사업개발투자 형식에 따라 시행된다.

#### 제25조 법인 소득세, 수입(輸入)세 우대

1. 본 시행령에서 규정한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 법인세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본 시행령에서 규정한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는 수출입법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우대 받는다.

## 제26조 토지 사용세, 토지 사용료, 토지 및 해수면 임차료 우대

투자자는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A의 투자 우대 분야와 부록 B의 투자 우대 지역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토지 혹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를 교부 받거나, 토지를 임차하며, 토지 사용세, 토지 사용료, 토지 임차료,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등을 토지법과 세법에 의거하여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 제27조 투자우대 절차

투자우대 절차는 투자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제28조 투자 우대 조정, 보완, 정지

1. 투자프로젝트 시행 중 만약 투자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추가로 투자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이미 발급된 투자승인 확인서의 투자우대 사항의 조정과 보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투자프로젝트 시행 중, 만약 투자승인 확인서에 규정한 투자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투자우대는 취소된다.
3. 투자우대를 시행하는 국가관리기관은 투자자가 투자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기 사항을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 제29조 본 시행령 발효 이전의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우대혜택

1. 국내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법, 협동조합법, 그리고 세법 등에 따라 우대받고 있는 투자자는 투자우대 확인서 혹은 이미 발급된 투자허가서에 의해 지속적으로 투자우대를 받는다.

2. 본 시행령이 규정한 투자우대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가 투자법 발효 이전에 시행된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발효 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계속 우대 혜택을 받는다.
3. 만일 공포된 신규 정책과 법률이 현재 투자자의 권리와 우대사항보다 나은 경우, 투자자는 신규 법률과 정책이 발효된 후부터 잔여 기간 동안 (기간이 남았다면) 새로운 권리와 우대규정을 적용 받는다.

## 제 2 절 투자 지원

### 제30조 기술이전 지원

1. 정부는 지적재산법과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양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자본출자에 이용된 기술의 가치 혹은 기술이전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술이전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선진기술, 원천기술, 신제품 생산, 제품의 생산성, 경쟁력, 품질의 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베트남 이전을 적극 권장하며, 기술혁신 투자활동, 관리 및 기술사용 제고를 장려한다.
3. 경제-사회개발 목표에 의거하여, 정부는 중소기업, 하이테크 및 신규기술에 연구 활동, 개발,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기술이전에 대한 양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술이전에 관한 수속절차는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31조 교육지원

1. 정부는 투자자가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자본 출자와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 a) 교육지원기금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는다.
  - b) 기업의 교육경비는 법인세로 산정되는 소득 확정시, 생산 경비로 인정된다.
2. 정부는 근로자 교육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교육지원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제32조 개발투자와 투자서비스 지원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개발투자를 지원한다.
  - a)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상업은행이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대출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주요 경제 계획의 중요 산업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
  - b) 개발투자 지원법에 부합
  - c)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
2. 개발투자신용지원은 국가의 개발투자신용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경제구성요소를 막론하고 투자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지원, 장려한다.
  - a) 투자, 관리 자문
  - b) 지적 재산권, 기술이전 자문
  - c) 직업, 기술, 관리 노하우 교육
  - d) 시장정보, 과학기술 정보, 기타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사회 정보 제공
  - e) 마케팅, 투자 및 무역 진흥

- f) 사회단체, 사회-직업 단체의 설립 및 참여
- g)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설계센터, 실험센터의 설립

### 제33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

1.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주변지역의 사회적, 기술적 기반시설 건설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적극 장려한다.
2. 수상이 승인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처,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省)급 인민위원회라 함)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주변 지역의 사회적, 기술적 기반시설을 건설한다.
  - a)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로 유입되는 도로 건설을 지원한다.
  - b) 정부는 공단 근로자를 위한 주거구역과 사회적 기반시설 건설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적극 장려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주변 지역의 사회적, 기술적 기반시설 건설 투자에 대해, 지방예산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

### 제34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

1.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한 일부 지방에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개발·건설하는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상은 중앙예산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 원칙, 제한, 건설영역 등을 규정할 수 있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의 기술적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

## 제35조 공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방식

1. 1인 초과인 투자자가 건설 및 운영에 참가한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단지의 기반시설의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건설 세부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며, 각각의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방의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투자자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수입창출이 가능한 특별단위를 설립하는 방안을 수상에게 제출하며, 수상은 특별단위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제36조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투자 지원

1. 정부는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과 주요 공익사업 및 서비스, 지역 외부의 기술적, 사회적 기반시설 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예산에서 투자자본을 배정한다.
2. 국가예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a)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 외부의 기술적, 사회적 기반시설 시스템 투자
  - b) 각 기능구역의 토지 정리, 토지 회수 가정의 재정착, 농경지 재정리
  - c) 기능구역에 집중된 폐기물, 오·폐수 처리 공정 투자
3. 경제특구의 기술적-사회적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장려한다.
4. 수상은 경제특구의 기술적-사회적 기반시설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위해 기타 자본동원 방안을 결정한다.
5. 첨단기술단지의 기반시설 시스템의 개발투자지원은 정부가 공포한 첨단기술단지 규제서에 따라 실행된다.

## 제 5 장 직접투자 수속 절차

### 제 1 절 승인심사 및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 제37조 수상의 투자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1. 투자자본 및 규모와는 상관 없이 다음에 속하는 프로젝트
  - a) 공항 건설 및 경영; 항공 운송 운영
  - b) 국립 항만 건설 및 경영
  - c) 석유 및 희소자원의 탐사, 개발, 제조; 광물 탐사 및 개발
  - d) TV · 라디오 방송
  - e) 카지노 운영 투자
  - f) 담배 생산
  - g) 대학 교육과정 시설 설립
  - h)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설립
2. 본 조 1항에 속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분야에 속한 자본규모 1조5000억동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 a) 전력 사업, 광물 제련, 금속 제련
  - b) 철도, 도로, 수로 기반시설 건설
  - c) 주류, 맥주 생산 및 경영
3. 다음과 같은 분야에 속한 외국투자프로젝트
  - a) 해양운송 운영
  - b) 우편, 통신, 인터넷망 구축 및 서비스 공급; 전파 전송망 구축
  - c) 인쇄, 신문잡지 발행, 출판업
  - d) 독립된 과학연구시설 설립
4. 본 조 상기 1, 2, 3항에 명시한 투자프로젝트가 수상 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종합계획에 속하고, 법률 규정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수상의 투

자 승인 결정을 위한 보고 절차 없이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5. 본 조 상기 1, 2, 3항에 명시한 투자프로젝트가 수상 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종합계획에 속하지 않거나,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시장개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계획투자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취합하여, 종합계획의 조정·보완 또는 투자시장 개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상에 이와 같은 의견을 보고한다.
6. 본 조 상기 1, 2, 3항에 명시한 투자프로젝트가 아직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분야에 속하는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계획투자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이 투자승인을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 제38조 성급 인민위원회가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등록 및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에서 진행될 본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수상이 승인한 투자프로젝트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방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개발프로젝트

#### 제3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가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진행될 본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수상이 승인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등록을 시행하고,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40조 투자프로젝트 서류 접수기관

1. 계획투자국<sup>4)</sup>은 본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접수한다.
2. 관리위원회는 본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접수한다.
3. 중앙직할 성·시에 속하지 않거나 다수의 중앙직할 성·시에서 전개될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투자자가 본사를 두거나 둘 예정인, 또는 지사, 운영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계획투자국에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한다.
4. 투자프로젝트 접수기관은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서류의 합법성을 검사하고 안내한다.

## 제41조 투자승인 확인서 내용

1.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투자등록 양식과 투자승인 확인서 양식은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적용한다.
2. 투자승인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투자자의 성명, 주소
  - b) 투자프로젝트 시행 장소, 토지사용 면적
  - c) 투자프로젝트의 목표 및 규모
  - d) 총 투자액
  - e) 투자프로젝트 시행 기간
  - f)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일정
  - g) 우대사항 및 투자지원 확인(있을 경우)
3. 만일 투자프로젝트가 경제단체 설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에는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법에 따른 사

4) 베트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로 영문명은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이다.

업자등록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승인 확인서는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의 기능을 한다.

4. 국내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가 경제단체 설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투자법 제50조 3항에 따라 투자 수속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는다. 투자자가 투자 수속과 경제단체 설립을 위한 사업자등록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길 요청할 경우, 본 조 3항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이후,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사업자등록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을 전달한다.

## 제 2 절 투 자 승 인

### 제42조 투자등록 수속이 불필요한 프로젝트

1. 자본규모가 150억 베트남동(VND) 미만이며 조건부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국내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본 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투자우대확인 또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같이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투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3조 국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1. 다음과 같이 투자자본 규모 150억 이상 3000억동 미만이며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국내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등록 절차를 실행한다 :
  - a) 투자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 b) 본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2. 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투자프로젝트 서류 접수기관에 투자 등록한다.

3. 서류 접수기관은 투자등록 신청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을 발급한다.
4. 투자자가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과 우대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등록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44조 외국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투자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투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등록 신청서(양식에 따름)
  - b)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의 경우 경영협력계약서
  - c)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투자자가 작성하며, 상기 내용에 책임을 진다)
2. 경제단체 설립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 조 1항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a) 기업법과 관련법에 따른 기업 유형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 서류
  - b)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간의 합작 경제단체설립 형태의 투자 형식인 경우, 합작계약서
3. 합법적 투자등록 신청 서류와 사업자등록 서류 접수 후,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기타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투자등록 서류와 사업자등록 서류(경제단체 설립과 투자프로젝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4.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 후,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을 계획투자부, 재정부, 무역부, 환경자원부, 베트남 중앙은행, 관련 전문분야 관리부에 송부한다.

제45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자본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1.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양식에 따름)
  - b)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의 자료를 제출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 c)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투자자가 작성하며, 상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d)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 경제-기술 설명서: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투자프로젝트 시행장소, 투자자본, 프로젝트 진행 일정, 토지사용 신청, 기술환경보호 서약
  - e)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의 경우 경영협력계약서
2. 경제단체 설립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 조 1항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a) 기업법과 관련법에 따른 기업 유형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 서류
  - b)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간의 합작 경제단체설립 형태의 투자 형식인 경우, 합작 계약서
3.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기반시설, 토지사용, 건설, 광물 및 기타 자원 탐사, 개발, 제조 등에 대한 종합 계획과 프로젝트의 부합성 여부  
위와 같은 종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관련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 b) 토지사용 신청: 면적, 토지 유형, 토지사용 일정
  - c) 프로젝트 시행 일정: 자본 출자, 건설, 프로젝트 목표 실현 일정
  - d) 환경 보호 해법: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분석 및 환경보호 기준에 적합한 처리 방법 모색

제46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자본규모 3000억 베트남동 미만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1. 투자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본 시행령 제44조 1, 2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
- b) 투자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 그리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C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필수충족조건 설명서

2.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투자법과 관련법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

관련 관리부서는 투자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 그리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C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가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률 규범문서 혹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이 프로젝트의 투자조건을 규정한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관련 관리부서의 의견 수렴 없이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b) 법률규정에 따라 투자조건을 충족한 국내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 시행령 제43조 2항에 명시한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7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자본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1. 투자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본 시행령 제45조 1, 2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
- b) 투자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 그리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C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필수충족조건 설명서

2. 심사내용은 본 시행령 제45조 3항과 제46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 제48조 수상의 심사결정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1. 투자자는 최소 원본 2부를 포함한, 서류 10부를 제출한다.
2. 서류접수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수 3일 이내에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관련 부처에 서류를 발송하여 해당기관의 의견을 묻는다.  
접수 서류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수정·보완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청한다.
3. 해당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수 15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적법한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수 25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수상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5.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수상 보고용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정부사무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수상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6. 수상이 투자프로젝트를 승인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는 투자승인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한다.
7. 투자 승인이 거절된 경우, 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거절사유를 정확하게 통보한다.
8.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젝트 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을 계획투자부, 재정부, 무역부, 환경자원부, 중앙은행, 관련 담당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 제49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심사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1. (성급 인민위원회가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성정부의 계획투자국에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서류 8부를 제출하며, (관리위원회가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서류 4부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서류접수 기관은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로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관련 국, 담당부서에 서류를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필요 시 관련 관리부에 서류를 전달한다.  
접수 서류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서류접수 기관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3. 해당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적법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20일 이내에 계획투자국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심사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승인 확인서 발급을 결정한다.  
관리위원회가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적법한 서류 접수 일로부터 근무일수 2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결정한다.  
투자 승인이 거절된 경우, 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거절사유를 정확하게 통보한다.
5.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프로젝트 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을 계획투자부, 재정부, 무역부, 환경자원부, 중앙은행, 관련 담당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 제50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심사에 대한 관련 관리부의 심사권한

1. 해당 관리부는 투자법 제29조, 본 시행령과 함께 첨부된 부록 C 그리고 투자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조건 및 종합계획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2. 투자법 제29조와 82조에 근거하여, 해당 관리부는 투자조건의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가 제정·공포할 수 있도록 제출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거나, 해당 기관이 종합계획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조건 및 종합계획은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공시되어야 하며, 투자 프로젝트 서류 접수기관 소재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 제 3 절 투자프로젝트 조정

#### 제51조 투자프로젝트 조정 절차

1.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승인 허가서 조정을 위해 서류접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한다.
2. 투자프로젝트 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 중 하나에 따라 진행한다.
  - a)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과 심사 없이 조정.
  - b)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에 따른 조정.
  - c) 투자프로젝트 조정 심사에 따른 조정.
3. 조정 등록 또는 심사가 불필요한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a) 조정 이후, 프로젝트 규모가 150억 베트남동(VND) 미만이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국내 프로젝트
  - b) 조정 이후, 투자자본 규모가 3000억 베트남동 미만인 투자 목표 및 시행 장소가 변경되지 않은 국내 프로젝트

#### 제52조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 및 조정 심사

1.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
  - a) 조정 등록에 속하는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투자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한 이후, 프로젝트가 다음에 속하

는 경우를 말한다:

조정 이후, 투자자본 규모가 3000억 베트남동 미만인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외국 투자프로젝트,  
조정 이후, 본 시행령 제51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국내 투자프로젝트.

b)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 신청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투자프로젝트 조정내용 승인 등록서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

합작계약, 경영협력계약, 기업정관 개정·보완본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c)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접수 받은 후,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조정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2. 투자프로젝트 조정 심사:

a) 조정 심사에 속하는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한 이후, 프로젝트가 다음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정 이후, 투자승인 확인서 심사에 속하게 된 외국 투자프로젝트,  
조정 이후,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게 된 국내 투자프로젝트

b) 투자프로젝트 조정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투자프로젝트 조정 신청서

조정 사유,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시 심사내용과 달라진 점, 프로젝트 조정 시점까지의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서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

합작계약, 경영협력계약, 기업정관 개정·보완본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c)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접수 받은 후,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조정 내용을 심사, 투자자에게 조정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d) 조정 이후, 프로젝트가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수상의 승인 심사에 속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투자조건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가 되는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 내용을 조정·보충하기 전에 수상에 상기 사실을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e) 조정 내용이 조건부 투자분야와 관련한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 내용을 조정·보충하기 전에 관련 부처의 심사 의견을 수렴한다.

#### 제 4 절    외국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보충 규정

##### 제53조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보충 서류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본 장 제2절에 명시한 서류 외에도, 본 시행령 제54, 55조의 규정에 따른 합작계약서 또는 경영협력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54조 합작계약서의 내용

합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작에 참여한 투자 단체, 개인 혹은 합작 양측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합작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유형
3. 영업 목표, 분야, 범위
4. 정관자본, 합작 계약자의 출자지분, 정관자본 납입일정 및 방식, 프로젝트 진행 일정
5. 프로젝트 활동기간
6. 프로젝트 시행 장소

7. 합작 양측의 권리와 의무
8. 재무관리 원칙, 소득분배, 영업상의 손해·손실 처리
9. 계약 수정 및 종료 방식, 양도 조건, 활동종료 조건, 기업해산 조건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위 내용 외에도, 합작계약 양측은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작계약서의 기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합작계약 양측 대표자는 합작계약서 각 장 및 마지막 장에 서명해야 한다. 합작계약서는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55조 경영협력계약의 내용

경영협력 계약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영협력 계약에 참가한 단체, 개인 혹은 각 측이 위임한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거래사무소 주소 혹은 프로젝트 시행 장소 주소
2. 영업 목표, 분야, 범위
3. 계약대상자의 출자비율, 영업 및 계약 결과 분배
4. 프로젝트 진행 일정
5. 계약기간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재무 원칙
8. 계약 수정 및 종료 방식, 양도 조건, 활동종료 조건, 기업해산 조건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위 내용 외에도, 계약당사자는 경영협력계약서의 기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양측 대표자는 경영협력계약서 각 장 및 마지막 장에 서명해야 한다. 베트남측과 외국측 간의 경영협력계약서는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56조 직접 투자에 대한 주식 매입, 기업 인수·합병

본 시행령의 제10조의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투자를 진행한다.

1.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은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다.
2.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51, 5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3.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본 시행령에 따른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 수속을 진행한다. 기업의 인수·합병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기업 인수·합병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외국투자자의 성명, 주소 및 대리인,  
 인수·합병 대상 기업명, 주소, 정관자본금, 영업분야,  
 기업의 인수·합병 내용에 관한 간략한 정보, 제안서 (있을 경우)
  - b) 기업 매각에 대한 사원총회,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서
  - c) 기업 인수·합병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상호, 주소, 본사 소재지,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및 조건, 직원 고용계획;  
 대상 회사의 재산, 자본, 주식, 채권 이전 절차, 조건, 기간;  
 인수·합병 시행일 양측의 책임
  - d) 피인수 회사의 정관
  - e) 인수·합병 승인 이후 기업의 정관 초안(만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4. 본 조 3항에서 규정한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경쟁법과 기업법 제153조에서 규정한 경제집중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57조 외국투자프로젝트의 투자형식 변경

1.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제21조에 따라 기타 투자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외국투자법에 따라 투자 허가서를 발급 받은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변경 및 재등록에 관한 정부의 별도 규정에 따라 투자형식을 변경한다.
3.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투자형식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 a) 투자형식 변경은 회사형태의 변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업법의 회사 변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b) 외국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투자형식 변경 서류를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제출한다:  
 변경 신청서, 투자형식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 기업의 소유주, 주주총회,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서(경영협력계약의 경우);  
 투자형식 변경기업의 정관; 경영협력계약서(경영협력계약의 경우)
  - c) 투자형식 변경에 관한 합작기업 사원총회 또는 투자자의 결정서(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합의서(경영협력계약의 경우)를 최종결정 통과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채권단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d) 본 조 3항에 규정한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 받은 후,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조정을 결정하여, 본 사실을 신청 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 5 절 투자, 경영 목적의 국가자본 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

## 제58조 국가자본 투자, 경영

1. 다음과 같은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를 위해 국가자본 사용 심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a) 국가예산
  - b) 국가 개발투자신용 자본
  - c) 국가가 보장하는 신용 자본
  - d) 국영기업의 개발투자자본
  - e) 국가자본 투자경영 공사로부터의 투자자본
2. 투자를 위한 국가자본 사용을 해당기관이 심사·승인하였을 경우, 투자주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 수속을 밟는다. 투자목적 국가자본 사용 승인 확인서는 투자 등록 및 투자 심사 서류에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이다.

## 제59조 투자 목적 국가자본 사용 승인 심사기관

1. 국가예산 사용 결정권을 지닌 해당 기관은 국가예산 사용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목적 국가자본 사용 여부를 심사·승인한다.
2. 베트남 개발은행은 국가의 개발투자신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심사·결정한다.
3. 재정부는 국가 보장 목록에 속하는 신용 자본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장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4. 경제단체, 공사, 기타 국영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국영기업의 회장 또는 사장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개발투자자본 사용을 심사·결정한다.
5. 심사기관은 수상의 결정에 따라 국가자본 경영투자공사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가자본 사용의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6. 심사기관은 투자 목적 국가자본 사용 심사를 조직하고, 승인 결정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60조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서류

투자프로젝트 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본 시행령 제59조에서 명시한 각각의 자본에 해당하는 심사기관에 제출한 투자자의 국가자본 사용 신청서
2.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가자본 사용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a) 프로젝트명
  - b) 프로젝트의 목표, 투자규모
  - c) 프로젝트 시행 장소
  - d) 투자 자본, 투자 자본 출처,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지분
  - e) 해당심사기관이 비준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 계획, 종합계획과 프로젝트가 어떻게 적합한지에 관한 설명, 투자자본 사용이 적합한지에 관한 설명
  - f) 재정적 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투자효과,
  - g) 투자금 회수 가능성,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대출금 상환 방안 (있을 경우)
  - h) 투자프로젝트 기간
  - i) 투자프로젝트 진행 일정

#### 제61조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서류 내용

심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당심사기관이 비준한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전략, 계획, 종합계획과 프로젝트의 적합 여부
2. 국가자본의 투자, 경영의 적합 여부, 투자목표, 투자효과, 관리 방식과 각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 유형의 적합 여부

3. 투자지원 정책과의 적합 여부(있을 경우)
4. 투자프로젝트 진행 일정, 투자프로젝트 기간
5. 투자금 회수 가능성, 대출금 상환 가능성 및 대출금 상환 방안(있을 경우)
6. 재정적 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투자효과

## 제 6 장 투자프로젝트 전개 및 경영조직에 대한 규정

### 제62조 투자프로젝트 전개

투자자는 투자목표와 내용, 그리고 투자승인 확인서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전개할 책임이 있다. 투자프로젝트를 전개함에 있어, 토지법, 환경법, 노동법, 사업자등록 및 투자등록법,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63조 건설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의 전개

투자자는 건설공정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64조 관리 조직의 고용

1.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투자관리와 경영활동 관리를 위한 조직 또는 개인을 고용할 수 있다.
2. 관리조직 또는 개인의 고용은 투자자와 관리조직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자와 관리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기재·규정한다.  
양측이 계약서 상에 합의한 관리비용은 기업측의 관리비용으로 계산된다.
3.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관리조직 또는 개인은 세금을 납부하며, 세법과 관련법에 따라 재정의무를 수행한다.

#### 제65조 자본 양도

1. 경제단체는 기업 내 자기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또는 주주 명단에 사원 또는 주주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산 양도시 기업은 투자승인 확인서 수정을 위한 자산 양도 사실을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자산 양도 조건은 아래와 같다.
  - a) 기업법, 본 시행령 그리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b)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과 비율을 보장한다.
  - c) 토지사용권 가치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법과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66조 프로젝트 양도

1.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에게 본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양도 조건은 본 시행령 제65조 2항에 따라 시행된다.
2. 경제단체의 프로젝트 양도가 해당 경제단체의 활동종료와 관련 없는 경우, 프로젝트 양도는 본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자본양도 조건 및 절차에 따른다.
3. 프로젝트 양도가 해당 경제단체의 경영투자활동 종료와 관련된 경우, 프로젝트 양도는 본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기업 합병·인수 조건 및 절차에 따른다.
4. 프로젝트 양도가 해당 경제단체의 경영투자활동 종료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양수자가 경제단체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자 변경 절차를 따른다.
  - a) 프로젝트 양도 서류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양도 등록서,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양수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서류, 프로젝트 전개 현황 보고서

- b)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프로젝트 양도 등록 서류를 접수하며, 접수 후,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를 조정한다.

#### 제67조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일정 연장

1.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정지 하거나, 약속한 투자프로젝트 일정을 연장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일시 정지 예정일 근무일수 15일 이전에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일시 정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이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또는 일정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활동이 재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본 사실을 통보한다.

#### 제68조 투자프로젝트의 활동 종료

1. 투자자는 투자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활동을 종료한다.
2.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의 활동 종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a)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12개월 후에도 투자프로젝트가 전개되지 않았거나, 투자승인 확인서 기재된 진행 일정보다 12개월 이상이 지연되었을 경우. 단, 본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프로젝트가 일시 정지되거나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 b)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법에 따라 활동을 종료 시킨다.
3.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법원과 중재위원회에 의해 투자활동 종료가 판결되었을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기관은 법원과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근거하여 투자활동 종료를 결정한다.

4. 투자프로젝트 종료 결정서는 투자자에게 발송되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보관한다.

본 조 1, 2, 3항에서 규정한 투자프로젝트 종료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투자승인 확인서를 회수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제69조 투자프로젝트 청산

1. 투자활동 과정 중, 본 시행령의 제68조가 규정한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가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승인 확인서 회수를 위해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단, 본 시행령 제68조의 2, 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프로젝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투자프로젝트의 청산이 기업의 해산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는다.
  - b) 투자프로젝트의 청산이 기업의 해산과 관련된 경우,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해산 절차를 밟는다.
3. 본 조 2항에서 언급한 기업해산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종료 시, 기업은 투자프로젝트 청산 절차를 시행한다. 투자프로젝트 청산 기간은 활동종료가 결정된 후 6개월을 초과해선 안된다. 특별한 경우, 청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국가관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업이 프로젝트 청산을 위해 청산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거나, 본 조 3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청산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쟁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혹은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다.
5. 본 조 3항에서 규정한 기업해산과 관련한 투자프로젝트의 청산의 경우, 만일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청산 작업은 종료되며, 파산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 제70조 보세(保稅) 창고

1. 수출가공단지, 공업단지, 수출품제조회사는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보세창고 설립조건 및 설립허가는 세관 수속, 검사 및 감독에 관한 2005년12월15일자 세관법 시행령(문서번호 154/2005/ND-CP)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세창고에 반입된 제품은 베트남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나,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일시금지 제품군에 속하지 않아 본 제품을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는 세관에 적법한 수입절차를 따른 수속을 밟으며, 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보세창고에 반입된 제품이 파손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품일 경우 재수출 되거나 폐기한다. 세관, 세무서, 환경기관의 감독 하에 올바르게 제품을 폐기한다.

## 제 7 장 투자에 관한 국가 관리

## 제71 조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의 내용, 권한, 책임

1.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 a) 정부는 투자발전 동력을 동원하고, 조절하기 위해 투자발전전략,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b) 국제적 경제 추세와 부합할 수 있도록 투자활동 관련 법률, 정책을 공포, 안내, 시행하며, 투자관련 법률규범 문서의 제정을 감독한다. 담당기관이 잘못되었거나, 적합하지 않는 문건을 폐기하는 경우 등에 수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c) 국제 협력, 국제조약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활동 관련 국제조약 협상 및 체결 등을 실행한다.

- d) 투자 촉진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e)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투자자의 투자활동을 검사, 감사, 감독한다.
  - f) 투자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안내, 지원하며, 투자활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구사항 및 장애 요소를 해결한다.
  - g) 투자활동의 거시적 경제효과 및 작용을 평가한다.
  - h) 해당 국가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투자활동을 관리한다.
  - i) 각 급(級) 투자 관련 국가관리 기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투자국가관리 업무 역량 강화 관련 교육, 연수 등을 진행한다
  - j) 투자활동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진정·제소·고소를 해결, 투자활동에 대해 성과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법률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한다.
2.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의 권한 책임
- a) 정부는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며, 전략, 정책, 법률규범문서를 수립, 시행하고, 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승인하여, 경제 구역·영역·분야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한다.
  - b) 수상은 각 부, 부처, 지방정부를 지도하여 투자 관련 법률과 정책이 엄중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해당기관에 국가관리 업무를 분배하며, 각 부, 부처, 지방정부의 관할권 밖의 투자활동의 관리나 운영과정 중의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 c) 수상, 각 부,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관리위원회는 기업과 투자자와의 면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청사항, 궁금증,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d) 각 부,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관리 분야와 범위 내에

서 투자활동을 안내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절차가 간단, 신속,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각 부, 부처 등급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법률의 틀을 벗어난 투자우대를 규정한 문서를 제정·공포하거나,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절차를 첨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 제72조 계획투자부의 책임과 권한

1. 각 부, 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관련 법률 및 정책을 작성하고, 수립한다.  
투자법 규정의 시행을 검사, 감독, 모니터한다.
2. 각 부, 부처,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투자개발에 관한 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종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각 부,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수상에게 보고 승인토록 하며, 기존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상 승인 권한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이를 개발 계획에 포함 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상 승인 권한에 속한 프로젝트로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로 그 필요성이 높을 경우 투자 증명서 발급 주무 관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수상에 보고 검토 승인토록 한다.
4. 국가 중요 투자프로젝트 및 수상 결정 권한에 속한 기타 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5. 각 부,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와 연계하여 국내외 투자촉진 프로그램과 계획을 구축하고 촉진 활동을 조직한다. 대 베트남 투자 잠재력이 높은 나라 및 지역에 투자진흥 기관을 설치한다.
6. 각 부, 부처와 협력, 협상을 통해 정부에 투자활동 관련 국제 조약에 참여하거나 국제 조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투자 활동에 관련 국제 협력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7. 각급 투자 관련 국가관리 기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투자국가관리 업무 역량 강화 관련 교육, 연수 등을 진행한다.
8. 통계청과 협력하여 통계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투자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 투자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국가 정보 시스템을 수립한다.
9. 각부, 부처,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 프로젝트 준비, 진행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투자활동의 거시적 경제 효과 및 작용을 평가한다.
11. 투자 활동에 대해 관할권에 따라 점검, 감사, 감독 활동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과 합동 감사, 감독 진행 내용과 계획을 수립한다; 투자법과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 관할 주무 관청의 투자 증명서 발급, 조정, 회수 업무를 감사하며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투자 과정상의 계획 이행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감사 한다.
12.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투자활동 현황을 종합하여 수상에게 보고 한다.

#### 제73조 재정부의 책임과 권한

1. 관련 각 부, 부처와 협력하여 투자 지원 및 우대 관련 법률과 정책을 입안하고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투자 지원 및 우대 혜택 관련 절차 및 수속 과정에 대해 안내 한다.
2. 관할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 승인서를 발급하며, 투자허가 승인서가 발급된 프로젝트의 진행을 검사, 감사, 감독한다.
3. 수상과 계획투자부가 승인심사권을 지닌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재정보증 및 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심사하고,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4. 투자프로젝트의 회계, 금융제도 시행에 대해 검사, 감사, 감독한다.
5. 재정부는 성급 인민위원회,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세금, 요금, 비용, 세관 수속, 재정관리 그리고 기타 금융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과 장애요소를 해소·해결한다.

## 제74조 무역부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1. 무역부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투자활동 관련 통상분야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한다.
2. 관할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 승인서를 발급하며, 투자허가 승인서가 발급된 프로젝트의 활동을 검사, 감사, 감독한다.
3. 수상 승인 권한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 중 무역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하며 베트남이 국제 조약에서 약속한 투자 관련 조건들에 대해 공표한다.
4. 투자프로젝트의 통상활동에 대한 점검, 감사, 감독 활동을 실시한다.
5. 무역부는 성급 인민위원회,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내 무역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과 장애요소를 해결한다.

## 제75조 환경자원부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1. 투자활동과 관련한 토지관리, 토지정비 보상, 자원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의 시행을 안내한다.
2. 수상 승인 권한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들 중 토지 관련 문제, 부지 정리 문제, 자원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토지관리, 토지정비, 자원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검사, 감사, 감독한다.
4. 환경자원부는 성급 인민위원회,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내 토지, 토지정비 보상, 자원 사용,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과 장애요소를 해결한다.

## 제76조 과학기술부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1. 과학기술부는 투자활동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수립, 규정의 시행 안내 등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개하고 수상에 보고

하여 첨단기술단지 종합 개발 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2. 프로젝트 승인심사권을 지닌 수상과 계획투자부에 투자프로젝트 내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검사, 감사, 감독활동 등을 조직할 수 있다.
4. 각 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프로젝트 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이나 장애요소를 해소·해결한다.

#### 제77조 건설부의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1. 관련 각 부, 부처와 협력하여 법률, 정책을 수립하고 건설 관련 각 규정에 대한 이행을 안내한다.
2. 수상 승인 권한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 중 건설 부분에 대한 국가관리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3. 투자 활동에서 건설과 관련된 대한 정책, 기준,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사, 감독, 검사한다.
4. 각 부,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 프로젝트 중 건설 분야 관련 애로 사항과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78조 베트남 중앙은행의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1. 중앙은행은 관련 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한 신용 및 외환 관리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수립, 규정의 시행 안내 등을 주재, 전개한다.
2. 중앙은행은 해당 권한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며,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프로젝트에 대해 검사, 감사, 감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승인심사권을 지닌 수상과 계획투자부에 투자프로젝트의 신용, 외환관리 문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4. 투자프로젝트의 신용, 외환관리에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검사, 감사, 감독활동 등을 조직할 수 있다.
5. 각 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프로젝트 내 신용, 외환관리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이나 장애요소를 해결한다.

제79조 각 부, 부처 동급기관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

자신의 권한과 임무 내에서 각 부, 부처 동급기관은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투자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 수립에 대해 각 부처와 부처 동급기관은 계획투자부와 함께 협력한다.
2. 관련 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법률, 정책, 기술규범표준과 투자활동과 관련한 시행 안내 등을 배포한다.
3. 조건부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조건을 수상이 공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한다.
4.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목록,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투자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한다.
5. 자신이 관할권에 속해 있는 분야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 목록, 투자 조건, 기술 기준, 개발 계획을 공표 한다.
6. 조건부 투자프로젝트의 투자 조건을 심사하고, 관련사항을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프로젝트 승인심사권을 지닌 수상과 계획투자부에 투자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7. 투자조건 시행에 관해 해당분야에 대해 검사, 감사, 감독할 수 있으며,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관리를 시행한다.
8. 각 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자신의 해당 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궁금증이나 장애요소를 해결한다.

## 제80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의 책임과 권한

1.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성급 인민위원회는 각 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 프로젝트 목록을 수립하여 공시하며, 투자촉진 활동을 조직·전개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등록 및 심사, 투자허가 승인서의 발급, 수정 및 회수, 관할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한 이전의 투자프로젝트 활동정지 결정 등을 시행·전개한다.
3.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의 주요 내용에 따라 국가 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a)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투자허가 승인서 상에서 밝히고 있는 투자 목적 이행 여부, 투자 자본 납입 및 투자 프로젝트 전개 상황에 대한 감사, 감독 활동을 진행하며, 재정의무의 준수 여부, 노사관계, 노사의 합법적 권리 보호 여부, 정치-사회 활동, 생태 환경 보호 유무에 대한 점검,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련 각 부, 부처와 합동으로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한다.
  - b) 토지 사용 권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토지 사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부지 정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애로 사항과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상, 또는 관련 각 부, 부처에 이를 건의하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 d)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활동을 실시한다
4. 건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의 개발 세부 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개발 세부 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한다.
5. 매 분기, 6개월, 년 단위로 종합관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투자 활동 상황을 계획투자부에 보고 한다.

제81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의 책임과 권한

1. 투자 활동,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 기준, 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각 부, 부처, 지방정부에 개진할 수 있다.
2.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해 투자 등록, 투자 프로젝트 심사, 투자승인 허가서 발급, 조정, 회수 업무를 담당 한다.
3. 투자프로젝트 전개, 자본 출자 정도, 투자허가 승인서가 규정한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감독, 감사, 모니터하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이행, 임금과 근로자와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리, 정치-사회 조직의 활동, 생태환경의 보호 등을 감독, 감사, 관장한다.
4.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공금증이나 장애요소를 해결하며, 자신의 권한 밖의 문제에 대하여는 수 상 또는 관련부처에 건의·의뢰한다.
5.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경제특구 내 투자효과를 평가한다.
6.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의 투자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와 성급 인민위원회에 종합, 제출한다.

제82조 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1.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란 중앙직할시 혹은 성에 위치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수상이 설립 결정한 기관이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는(수상이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직, 임용, 업무 계획 프로그램 수립과 활동경

비 운영 등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와 지도를 받는다.

2. 무역, 재정,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 기관들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에 자신의 업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파견한다.
3.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 활동규제와 성급 인민위원회와의 관계는 수상에 의해 규정된다.

### 제83조 투자촉진 활동 시행

1. 투자촉진 활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a)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 계획, 전략을 수립하며, 각 경제 구성기관으로부터 자본동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b) 투자환경, 잠재력, 기회에 대해 선전, 홍보,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c) 국내외에 홍보, 안내, 지원 등을 위한 투자 진흥기관을 조직하여, 투자자가 투자법의 규정과 정책을 이해하고, 투자프로젝트 시행 지역과 분야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d) 시기별, 단계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외국투자 유치가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지방 및 분야별 프로젝트 목록을 수립한다.
2. 투자유치 목표에 의거하여,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계획투자부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촉진 계획을 구축한다.
3. 국가기관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경비는 예산에서 지급되며,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통일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매년 각 부, 부처 동급기관, 정부 산하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투자촉진활동에 대한 연간 경비 지출을 추산한다.

계획투자부와 협력한 재 정부는 투자촉진활동을 위한 경비 조성과 투자 촉진활동에 대한 재정관리에 대해 안내한다.

## 제84조 투자활동 감사 및 투자 위반처리

1. 투자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관리 활동에 대한 투자 감사 범위와 투자 감사의 조직 및 활동은 투자법과 감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투자법 위반 행위와 투자 관련 위반 행위의 처리는 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85조 분쟁해결

투자 활동 관련 분쟁의 해결 방식은 투자법 12조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시행 조항

## 제86조 투자법이 발효되기 전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 적용

1. 투자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한 국내 프로젝트는 투자등록 수속 혹은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 할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을 원한다면, 승인서 발급 권한을 가진 주무 기관에 이를 신청한다. 이때 투자 수속 및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만일 투자 심사 대상에 속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2. 투자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외국투자자본을 가진 프로젝트로 투자승인 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투자법 제 88조, 기업법 170조, 외국투자자본기업 전환 및 재등록에 대한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7조 개인(민간) 기업 또는 교육, 훈련, 의료 분야 및 공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적용

투자법과 본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에 근거하여, 수상은 외국투자자의 개인(민간)기업의 설립 투자에 대해 규정하며, 교육, 훈련, 의료 분야 및 공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 보험 가입(bao hiem khach hang), 담보(Ky quy)에 대해 규정한다.

#### 제88조 시행 조항

1. 본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된다.
2. 본 시행령은 아래의 시행령들을 대체한다.
  - a) 2000년 7월 31일자 No. 24/2000/NĐ-CP 베트남 외국 투자법 세부 규정 시행령, 2003년 3월 19일자 2000년 7월 31일자 No. 24/2000/NĐ-CP 베트남 외국 투자법 세부 규정 시행령 개정 및 보완 시행령,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관련 규정 시행에 대한 1997년 4월 24일자 시행령 No. 36/CP;
  - b) 1999년 7월 8일자 국내 투자 장려법(개정법) 세부 규정 시행령 No. 51/1999/ NĐ-CP, 2002년 3월 29일자 국내 투자 장려법(개정법) - 1999년 7월 8일 자 세부 규정 시행령 No. 51/1999/ NĐ-CP 상의 부록에 명기된 목록 A, B, C에 대한 개정, 보완 관련 시행령 No. 35/2002/ NĐ-CP;
  - c) 2003년 12월 22일자 법인세법 세부 규정에 대한 시행령 No. 164/2003/NĐ-CP에 규정된 투자 우대 지역, 분야 관련 목록, 2004년 8월 6일자 법인세법 세부 규정에 대한 시행령 No. 164/2003/NĐ-CP-2003년 12월 22일자 개정, 보충 관련 시행령 No. 152/2004/ NĐ-CP;
  - d) 2005년 12월 08일자 수출입세법 세부 규정 시행령 No. 149/2005/ NĐ-CP 상에 규정된 투자 우대 지역, 분야 목록
  - e) 본 시행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투자관련 기타 규정
3.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직능과 임무의 범위 내에서 본 시행령의 시행 안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부 록 A

## 투자 장려 분야 목록

## A. 특별 우대 투자 분야

- I.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 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9. 식수 및 조립
  10.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 어업

12.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13.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 III.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14.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15.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16.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17.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18.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 V.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VI.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20.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21.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22.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23.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 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 VII.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24.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25. 해난 구호 서비스
26.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 B. 일반 우대 투자 분야

- I.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6.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溉)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 II.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20. 약용 식물의 재배
21.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22.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류의 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24.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25.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III.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26. 유류 오염 방지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7.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28.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IV.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29.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V.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30.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31.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32.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33.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3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VI.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 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VII. 전통 분야 발전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VIII.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상에서 공중 전화 연결 센터 개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 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49.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부 록 B

투자 우대 지역 목록

| 차례 | 성(省)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특별히 낙후된 지역                                                    | 경제 - 사회적 여건이<br>낙후된 지역                                                                 |
|----|-------------|-------------------------------------------------------------------------------|----------------------------------------------------------------------------------------|
| 1  | Bac Kan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2  | Cao Bang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  | Ha Giang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4  | Lai Chau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5  | Son La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6  | Dien Bien   | 성(省)내 전체 현과 Dien Bien<br>시(市)                                                 |                                                                                        |
| 7  | Lao Cai     | 성(省)내 전체 현                                                                    | Lao Cai 시(市)                                                                           |
| 8  | Tuyen Quang | Na Hang, Chiem Hoa 현                                                          | Ham Yen, Son Duong, Yen<br>Son va thi xa Tuyen<br>Quang 현                              |
| 9  | Bac Giang   | Son Dong 현                                                                    | Luc Ngan, Luc Nam, Yen<br>The, Hiep Hoa 현                                              |
| 10 | Hoa Binh    | Da Bac, Mai Chau 현                                                            | Kim Boi, Ky Son, Luong<br>Son, Lac Thuy, Tan Lac,<br>Cao Phong, Lac Son, Yen<br>Thuy 현 |
| 11 | Lang Son    | Binh Gia, Dinh Lap, Cao Loc,<br>loc Binh, Trang Dinh, Van<br>Lang, Van Quan 현 | Bac Son, Chi Lang, Huu<br>Lung 현                                                       |
| 12 | Phu Tho     | Thanh Son, Yen Lap 현                                                          | Doan Hung, Ha Hoa, Phu<br>Ninh, Song Thao, Thanh<br>Ba, Tam Nong, Thanh<br>Thuy 현      |

|    |             |                                                                                                   |                                                            |
|----|-------------|---------------------------------------------------------------------------------------------------|------------------------------------------------------------|
| 13 | Thai Nguyen | Vo Nhai, Dinh Hoa 현                                                                               |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
| 14 | Yen Bai     |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
| 15 | Quang Ninh  |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 현 부속 도서들                                                              | Van Don 현                                                  |
| 16 | Hai Phong   | Bach Long Vy, Cat Hai 현                                                                           |                                                            |
| 17 | Ha Nam      |                                                                                                   | Ly Nhan, Thanh Liem 현                                      |
| 18 | Nam Dinh    |                                                                                                   |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
| 19 | Thai Binh   |                                                                                                   | Thai Thuy, Tien Hai 현                                      |
| 20 | Ninh Binh   |                                                                                                   |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
| 21 | Thanh Hoa   |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 Thach Thanh, Nong Cong 현                                   |
| 22 | Nghe An     |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
| 23 | Ha Tinh     |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
| 24 | Quang Binh  |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25 | Quang Tri   | Huong Hoa, Dac Krong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                   |                                                                                                                           |                                                                          |
|----|-------------------|---------------------------------------------------------------------------------------------------------------------------|--------------------------------------------------------------------------|
| 26 | Thua Thien Hue    | A Luoi, Nam Dong 현                                                                                                        |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
| 27 | Da Nang           | Hoang Sa 현                                                                                                                |                                                                          |
| 28 | Quang Nam         |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 Dai Loc, Duy Xuyen 현                                                     |
| 29 | Quang Ngai        |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 Nghia Hanh, Son Tinh 현                                                   |
| 30 | Binh Dinh         |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 Hoai An, Phu My 현                                                        |
| 31 | Phu Yen           |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 Song Cau, Tuy Hoa, Tuy An 현                                              |
| 32 | Khanh Hoa         |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
| 33 | Ninh Thuan        | 성(省)내 전체 현                                                                                                                |                                                                          |
| 34 | Binh Thuan        | Phu Quy 현                                                                                                                 |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
| 35 | Dac Lak           | 성(省)내 전체 현                                                                                                                |                                                                          |
| 36 | Gia Lai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7 | Kon Tum           |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
| 38 | Dak Nong          | 성(省)내 전체 현                                                                                                                |                                                                          |
| 39 | Lam Dong          | 성(省)내 전체 현                                                                                                                | Bao Loc 군(郡)                                                             |
| 40 | Ba Ria - Vung Tau | Con Dao 현                                                                                                                 | Tan Thanh 현                                                              |

|    |            |                                                   |                                                             |
|----|------------|---------------------------------------------------|-------------------------------------------------------------|
| 41 | Tay Ninh   |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2 | Binh Phuoc | Loc Ninh, Bu Dang, Bu Dop 현                       |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
| 43 | Long An    |                                                   |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
| 44 | Tien Giang | Tan Phuoc 현                                       |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
| 45 | Ben Tre    |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6 | Tra Vinh   | Chau Thanh, Tra Cu 현                              |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
| 47 | Dong Thap  |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48 | Vinh Long  |                                                   | Tra On 현                                                    |
| 49 | Soc Trang  | 성(省)내 전체 현                                        | Soc Trang 군(郡)                                              |
| 50 | Hau Giang  | 성(省)내 전체 현                                        | Vi Thanh 군(郡)                                               |
| 51 | An Giang   |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 성(省)내 나머지 현                                                 |
| 52 | Bac Lieu   | 성(省)내 전체 현                                        | Thi xa Bac Lieu                                             |
| 53 | Ca Mau     | 성(省)내 전체 현                                        | Ca Mau 시                                                    |
| 54 | Kien Giang | 성(省)내 전체현 및 부속 도서                                 |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
| 55 | 기타 지역      |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 공업단지                                            |

## 부 록 C

## 외국 투자자에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 상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 부 록 D

## 투자금지 분야 목록

## I.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1.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2.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3.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II.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4.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5.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6.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8. 인간 복제 실험

## III.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IV.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12.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V.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각종 투자 프로젝트